아동복지시설 아동 인권보호 매뉴얼



차 례

제1부. 아동복지시설취약아동 보호강화 방안1
1. 추진백경 및 필요성 1
2. 대책 주요 내용
제2부. 아동학대의 이해5
1. 아동학대의 개념5
2. 아동학대 유형 6
제3부. 아동복지시설내 아동학대 예방7
1. 아동 인권보호 강화 및 학대 예방을 위한 여건 조성8
2. 아동복지시설의 자율적 예방 활동 활성화 15
3. 외부기관 참여를 통한 시설 운영 개방성 제고 18
제4부. 아동복지시설내 아동학대 신고26
1. 신고의무자26
2. 아동학대 의심 사례 신고 27
3.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보호28
4. 아동학대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제32
제5부. 아동복지시설내 아동학대 징후 발견시 대응 35
1. 조사 및 판단35
2.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38
3. 사례종결 및 사후관리46

제6부. 학대 가해자 처벌 및 학대 발생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48
1. 학대 가해 시설장 또는 종사자에 대한 처벌48
2. 아동학대 발생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54
제7부.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사건 처리를 위한 기관별 역할 57
[붙임]
1. 아동학대 징후 체크리스트67
2. 아동학대신고의무자용 점검표69
3. 피해아동 보호 절차70
4.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 임명 현황 보고 및 점검・신분증 양식 72
5. 아보전 전용 아동학대신고함 설치 및 관리75
6. 관련 법령79
7.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99
8.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기관102
9. 전국 정신건강증진센터 현황 104
10. 전국 해바라기센터 현황112
11. 전국 성폭력상담소 현황113
12. 종사자의 스트레스 대응 및 자가 진단121
13. 아동 대상 안전 및 인권 교육 실시 결과 보고 양식125
14. 시설운영위원회 보고 양식126
15. 아동학대사건 업무처리 진행도127
16.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처리 진행도 128

잠깐! 이것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동이란 ?

- 아동은 양육과 훈육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입니다
- 아동은 잠재능력이 있고, 자신만의 관심과 욕구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 아동은 자신만의 아이디어와 사물을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 아동의 견해 경험 희망은 어른들의 것과 다릅니다.
- 아동은 꾸준이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아동에게 4 가지의 기본권이 있으며,

생존권: 아동은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려야 합니다.

보호천 :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하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 받아야 합니다.

발달권: 아동은 교육을 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양심·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등을 통해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합니다.

참여권: 아동은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등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그것을 존중 받아야합니다.

권리수호에 있어서 3 가지 원칙이 있고,

아동에 대한 규정 : 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입니다.

비차별의 원칙: 성별, 종료, 사회적 신분, 인종, 국적, 그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아동은 차별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이 실시하는 모든 아동에 관한 활동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아동의 이 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은 1 가지입니다.

1과정 : 아동권리 실현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대한민국 아동권리헌장

○ 2016.4월 사회관계장관회의 심의 · 의결을 통해 확정하고 '16.5.2일 공표됨



아동권리헌장

모든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생명을 존중받고, 보호받으며, 발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가 있다. 부모와 사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아동의 권리를 확인하고 실현할 책임이 있다.

- ① 아동은 생명을 존중받아야 하며 부모와 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 ②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③ 아동은 출신, 성별, 언어, 인종, 종교, 사회·경제적 배경, 학력, 연령,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 ④ 아동은 개인적인 생활이 부당하게 공개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⑤ 아동은 신체적 · 정신적 ·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등을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
- ⑥ 아동은 자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 ⑦ 아동은 자유롭게 상상하고 도전하며 창의적으로 활동하고 자신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 ⑧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누리며 다양한 놀이와 오락, 문화 · 예술 활동에 자유롭고 즐겁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
- ⑨ 아동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이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2016년 5월 2일





제1부. 「아동복지시설 취약아동 보호강화 방안」 주요 내용('17.2.24 발표)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 정부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16.3월, 9월) 추진으로 시설내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지속 증가(('15) 233건 → ('16) 253건)하는 등 일부 성과
 - 대부분 내부종사자 및 학교 상담 교사 등 신고의무자가 신고
 - 그러나 최근 아동복지시설내 학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등 학대 근절에는 아직 한계
- □ 최근 아동학대 발견 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 일부 보완 필요 사항 발굴
 - (조기 발견) 외부 감시 체계 미흡하여 시설이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시설의 경우 불이익을 염려해 학대 사실 은폐, 학대가 장기간 지속된 이후 발견
 - (인식) 일부 시설장·종사자의 경우 전통적 훈육관을 고수하여 아동학대 위험요소 내재, 아동간 성폭행·폭력 예방 노력 미흡
 - (**사후관리**) 가해자·피해아동 분리 조치가 미흡하고, 종사자 자격기준이나 시설 처분 기준도 불합리 → 사후관리 미비점 확인
- □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시설내 아동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아동복지시설** 취약**아동 보호강화**」 방안 마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확정 · 발표('17.2.24)
 - 동 대책 후속 조치 일환으로 「아동복지시설내 아동 인권보호 매뉴얼」 마련

2. 대책 주요 내용

- (1) 아동 학대에 대한 조기 발견
- □ 외부 감시 시스템 대폭 확충, 시설 운영 개방 확대
 - (지자체)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아동위원 등, 약 300여명)" 신설, 인권보호관을 시설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실질적 활동 보장
 - (**학교**) '아동 보호를 위한 평가 매뉴얼' 개발·보급

- (경찰) 시설을 경찰 순찰 구역에 포함하여 예방 활동을 강화
- (**아보전)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용 '학대의심신고함' 설치**, 주기적(월1회 이상)으로 방문·확인
- ※ 신고함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만 개봉 가능
- (부모・후원자) 가족회의 수시 개최(분기 1회 이상) 등 부모 면담기회보장하고,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과 "1:1 멘토・맨티 결연" 활성화(시설평가 반영)
- (시설운영위원회) 시설별 아동학대 예방 계획·실적을 "시설운영위원회"에 주기적으로 보고(분기 1회), 외부 전문가 등 의견 반영 적극 반영

□ 시설장·종사자 등 내부 공익 신고 활성화

- (시설장 등) 시설장·종사자가 **학대 사실을 알고도 감추는 경우 예외 없이 과태료** (신고의무 위반, 500만원 이내) **부과 조치**
- 아동 학대 신고 및 아동 보호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한 경우 행정 처분 경감**· **면제, 신고 유인 제고**(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 (**내부 신고 활성화**) 종사자 대상 교육 및 신고자 보호 강화
- 아동학대 신고 의무 제도(법무부) 및 공익신고 절차·방법(국민권익위) 등에 대한 교육 실시·홍보 자료 제작·배포
 - 수사·재판시 가명조서 활용, 신고자에 불이익 조치시 관련 법률에 의한 처벌 이외에 시설장 교체 등 행정처분 병행(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 ※ '아동학대처벌법' 제62조의2 : 신고자 불이익 처분시 최대 징역 2년 또는 2천만원 이하 벌 금

(2) 신속한 보호 및 엄정한 대응

□ 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 조치 실시

- (**종사자 등**) 종사자 등에 의한 **학대 사례 확인시 즉시 직무에서 배제**(직위해제 등) 하는 등 **피해 아동과 신속한 분리**를 통해 추가 피해 예방
- 시설내 아동·부모 상담 실시, 희망시 원가정 복귀·타시설 전원 등 조치 병행

- (**피해 아동**) 성폭행·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 심리검사·치료비 우선 지원, 정신건강증진센터·학대피해 아동 쉼터 등과 연계해 상담·의료지원 등 제공
 - 집중 보호 필요시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해바라기센터 등 연계, 통합 서비스 지원
- (가해 아동) 성폭행·폭행 가해 아동에 대해서도 재범 방지를 위한 집중적 상담· 치료 및 교육 제공

□ 종사자 등 자격 기준 및 처분 강화

- 시설장·종사자 자격 기준 강화
 - 영유아보육법 등 타 사례를 참고하여, 시설장·종사자 결격 사유 구체화·제도화, 학대 위험이 높은 대상에 대한 취업 제한 강화
 -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20조 : 정신질환·마약 중독, 금고이상 실형 선고 후 집행 종료·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 등 취업 제한
- **학대 가해 종사자ㆍ시설에 대한 처분 강화**("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 (처벌 강화) 아동복지시설내 아동학대범죄 발생시 강화된 사건처리 기준('16.11, 대검찰청) 에 따라 엄정 수사 방침
 - ※ 강력사건에 준해 수사하고, 시설장·종사자 아동학대시 1/2범위내 가중 처벌
 - (취업 제한) 시설장·종사자 등 아동 학대 행위자에 대한 취업 제한 기간 연장(현행 10년 → 최대 20년)(아동복지법 개정), 종사자 채용시 아동 학대 전력 등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 제도 개선 실효성 제고
 - (시설 처분 강화) 아동에게 미치는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 ※ (현행) 경중과 관계없이 (1차) 영업정지 6개월, (2차) 시설폐쇄 → (개선) 중대 학대 발생시 즉시 시설 폐쇄, 단순 양육소홀·자진신고 등 행정처분 기준 완화·경감 등
 - (명단 공표) 아동 학대 행위로 행정 처분을 받은 시설·시설장 및 종사자 명단· 이력을 복지부·한국아동복지협회 등 홈페이지에 공표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내실화

□ 학대 예방 교육 실효성 제고

- (시설장) 아동인권 전문가 등 참여하에 **토론 방식** 교육 실시(연 1회)
- (종사자) 자체 교육 이외에 복지부·지자체 주관^{*}으로 연 2회(상·하반기) 전체 종사자 대상 교육 정례화(교육참여율 등 시설 평가 반영)
 -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강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 등 전문 인력 활용
- 시설내 아동학대 유형 분석·홍보(리플렛 배포 등), '아동 보호를 위한 평가 매뉴얼' 개발·보급(연구용역) 등 교육 커리큘럼 내실화
- (**아동**) 아동간 성폭행·폭력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 실시
- 초등학생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휴대용 인권 수첩' 제작·배포, 자신의 권리를 쉽게 확인하고 인권 침해시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

□ 학대 예방을 위한 자정 노력 활성화

- (**학대 예방**) 협회 내 "아동인권센터^{*}" 및 "아동인권위원회"를 운영('17년 상반기) 하고, 시설별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연중 실시
- 학대 발생·예방 활동 미흡 시설 등 불이익 조치(후원사업 지원 제외 등)
- (정서·심리 지원) 시군구 정신건강센터와 연계해 종사자에 대한 정서·심리지원 (연1회)을 실시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스트레스 관리 강화
 - ※ 스트레스 관리 매뉴얼 배포 및 스트레스 지수 측정, 고위험군 대상 힐링 캠프 참여 지원 등
- (인센티브) 복지부는 모범 사례 발굴·확산, 학대 예방 우수 시설·종사자 표창 및 시설 평가 반영 등 인센티브 제공, 시설간 건전한 경쟁 유도

제2부. 아동학대의 이해

1. 아동학대의 개념

○ 아동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 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아동복지법제3조제7호)

☑ 참고: UN 아동권리협약

◇ 협약 개요

- 아동은 한 인간으로서 고유한 존재이며, 스스로가 권리의 주체자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향유하고 자신의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채택
- 총 40개 조항으로 구성, 아동이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생존권),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발달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 받아야 할 권리(**보호권**), 자신의 나라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참여권**) 등 규정
- 국제연합(UN)에서 만장일치로 채택(1989.11.20. 우리나라 1991.11. 가입)

◇ 주요 조항

- 제2조 : 아동들은 누구나 모든 형태의 차별과 처벌로부터 보호될 권리가 있다.
- 제24조 : 아동은 가능한 최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건강과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제27조 : 아동은 그들의 신체적.정신적.도덕적.사회적 발달에 맞는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 제34조 : 아동들은 모든 형태의 성적착취와 성적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제39조 :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무력분쟁으로 인하여 희생이 된 아동은 적절 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2. 아동학대의 유형

- **신체학대**(Physical Abuse)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 **정서학대**(Emotional Abuse)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 **성학대**(Sexual Abuse)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
- 방임(Neglect) 및 유기(Abandonment)
 - 방임 : 보호자가 아동에게 반복적인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 이러한 방임에는 물리적·교육적·의료적 방임 등이 있음
 - (물리적 방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 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의 출생신고 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을 가정 내에 두고 가출한 경우 등
 - (교육적 방임)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 특별한 교육적 욕구를 소홀히 하는 행위 등
 - ※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을 의미함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
 - ※ 무단결석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을 하는 경우(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제1항)
 - (의료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예방접종이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장애 아동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 등
- 유기 :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방임에 포함)
- ※ 아동학대 유형별 징후 리스트는 "붙임1" 참조

제3부. 아동복지시설내 아동학대 예방

☑ 기본 방향

- 아동학대가 발생한 이후 사후 대응도 중요하지만,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시·도, 시·군·구, 아동복지협회 및 아동 복지시설 장 및 종사자 등은 아동복지시설내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대 예방 활동을 최우선으로 실시하여야 함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식이 중요. 훈육이라는 명목하에 목을 조른 행위, 빰을 수차례 때린 행위, 아동 앞에서 부모에 대해 험담을 하거나 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걷기 운동을 한 행위 등은 모두 아동 학대에 해당 될수 있음에 유의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종사자의 마음가짐

- 아동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하고 공감하며 아동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야 함
- 아동을 훈육해야 하는 상황 발생 시, 문제행동에 초점하여 단시간에 행동 수정을 기대하기보다, 아동과 지속적인 상호관계 속에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 충족되지 못한 욕구, 기질, 성숙의 문제 등 아동 개별적인 원인과 문제행동이 생긴 상황, 맥락, 환경 등 문제행동의 원인에 관심을 가져야 함

1. 아동 인권보호 강화 및 학대 예방을 위한 여건 조성

(가) 아동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

- **교육 대상** : 아동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 교육 시기 : 시설장 연 1회 이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연 2회 이상
- 신규자의 경우 지자체 주관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하거나, 가장 가까운 기간내 교육을 받도록 조치
- 아동복지시설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특히 신규자)의 교육 이수 여부를 반기별로 확인함
- 교육 미이수 종사자가 있는 경우 아동 보호를 위하 불가피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교육을 받도록 해당 시설에 권고 등 필요한 조치 실시

○ 교육 내용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피해아동 보호절차, 신고의무자에 대한 보호, 아동 양육 방법 등
- ※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용 양육 매뉴얼 개발 추진** 중(연구 용역), 향후 지자체 및 아동복지시설에 별도 통보 및 종사자 대상 교육 등에 활용 예정임

○ 교육 방법

- 시설장 교육은 아동복지협회 주관으로 연 1회 이상 토론 방식으로 진행하되,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아동인권 전문가 등이 참여토록 조치
- 종사자의 경우 시설장 책임하에 연 1회 이상 자체 의무 교육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는 거쳐 보건복지부에 보고
 - ※ '아동복지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 아동복지시설 시설장은 아동 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 '아동복지법' 제75조 제3항 1의2 : 시설장 등이 아동 학대 예방 등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내의 과태료 부과
- 지자체는 매년 2회 이상(상·하반기) 종사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 복지부에 보고하여야 함

※세부 시행 계획 등은 매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에서 별도 공문 시행 예정)

- 반기별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2~3회로 나누어 실시하여, 모든 종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 수준 높은 교육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인권센터, 여성가족부 등 전문강사 요원 적극 활용

(나) 아동을 대상으로 안전 및 인권 관련 교육 실시

- **교육 대상** : 아동복지시설내 거주 아동 전체
- 교육 내용 :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의 오남용 예방, 재난 대비 안전, 교통안전 등(아동복지법 제 31조 및 별표 3 참고)

○ 교육 방법

- 아동복지시설 장은 매년 3월말까지 아동의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내 아동에 대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말까지 관할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함
 - ※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유사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나,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는 해당 사항을 반드시 보고하여야 함(보고 양식: "붙임13" 참조)
- 아동에 대한 교육은 가능한 한 아동 인권·안전 관련 전문 교육을 이수한 종사자나 아동보호전문기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전문 강사가 실시하도록 함

- ☑ (참고1) 여성가족부 성폭행·폭력 예방 교육
 - (목적) 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취약한 일반국민들에게 '찾아가는 교육'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 공감대 확산 도모
 - (체계) 전국 17개 시·도 와 공동으로 추진 (18개 권역)

여성가족부

·전국단위 정책수립 및 총괄관리 ·전국중앙지원기관 위탁선정 및 관리

\Leftrightarrow

중앙지원기관(성폭력·가정폭력)

- ·전문강사양성.관리, 프로그램 개발·보급
- ·'찾아가는 교육'등 교육실시 세부지침 운 영 및 전략 집단 발굴, 시범 실시
- ·지역기관 운영관리.평가 및 지원
- ·교육홍보 및 유관기관 네크워크

7

 \bigcirc

시·도

·지역단위 계획 수립, 시행 ·지역기관 위탁선정 및 관리



지역지원기관

- ·찾아가는 예방교육 실시 및 운영관리
- ·전문강사 및 프로그램 연계 등 교육안내
- ·교육홍보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 (교육대상) 폭력예방교육 비의무대상 일반국민, 아동복지시설 등
- (교육진행) 전문강사에 의한 성폭력, 가정폭력예방교육 지원(1시간)
- (신청절차 등) 20명 이상, 교육 일정 10일 전까지 신청
 - * 전국 17개 시.도별 지역지원기관(18개소)으로 신청 및 전문강사 연계
- (교육장소) 교육신청단체에서 교육장 제공
 - * 자체적으로 교육장 확보가 어려운 경우 지역기관이 청소년성문화센터 등 장소 연계 가능

○ 지자체 행정 사항

- 아동복지시설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는 매년 1회 이상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에 대한 교육 실시 여부, 교육 내용 등을 점검하고, 내실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아동복지시설 장이 '아동복지법' 제31조에 의한 교육을 미실시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최대 300만원 이내)

(다) 아동 친화적인 발달환경 제공

- 시설내 아동에 대한 지지체계 강화
- 지역내 청소년 수련관, 종합사회복지관, 지역내 미술관·박물관, 대학 등과 연계해 시설내 아동에 대한 취미·여가 프로그램 연계, 아동에 대해 과학·음악, 체육, 문화, 캠핑 활동 등 다양한 체험 기회 제공
 - ※ 시·도 및 시·군·구는 아동복지시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내 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아동복지시설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시설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MOU 체결 및 지원, 서비스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함
- 아동복지시설은 동아리 운영 활성화, 축구·농구 등 집단 스포츠 활동 활성화 등을 통해 아동들이 건전하게 집단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는 아동들이 보다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집단 생활 시설 형태의 운영에서 벗어나 '소숙사 형태'로 전화·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 ※ 소숙사 형태 운영을 위해 기존 시설 기능보강이 필요한 경우 시·군·구 및 시·도 요청에 의해 기능보강비 우선 지원 예정
- 아동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아동 시설 입소 단계부터 아동 발달 단계에 따른 자립준비 프로그램을 운영(체험형 경제 교육 프로그램 확충, 진로 체험 활성화 및 전문 기술 교육 기회 제공 확대 등)
- ※ 시·도 및 시·군·구는 '아동자립지원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프로 그램 운영비 지원 등 재정적 지원과 함께 청소년직업체험센터, 대학, 고용지원센터, 일자리플러스센터, 기업 등 지역 사회 자원과 연계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 아동복지시설 장 및 종사자는 주기적(매월 또는 분기별) 상담을 통해 개별 아동의 생활 실태, 적응 상태 등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아동복지시설 입소 초기 아동의 경우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및 아동복 지시설 담당자는 입소 후 1개월간 집중적 관리 기간으로 설정하여, 주기적 상담과 함께 아동의 적응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아동양육시설의 장 등은 학대 받은 아동에 대해 보호조치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그

아동이 육체적·정신적으로 정상생활을 할 수 있을 때 까지 특별 지도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다른 아동과 분리된 별도의 거주 공간을 제공 할 수 있음

- 아동의 문제 행동 및 정서적 문제 등에 대응한 지원체계 구축
- 시설 부적응, 정서·심리적 어려움, 문제행동 등을 경험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전문 상담을 통한 개별 욕구 파악 및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 대 단기적이고 위기 정도가 낮은 경우 심리 치료 등 서비스 연계 : 심리검사·치료 비 지원, 재활지원 및 심리치료 지원 바우처 사업(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 의 위기 정도가 높고, 장기간·집중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전문적 서비스 제공 기관에 연계하여 서비스 제공 : 정신건강센터, Wee센터(교육청),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비행예방센터(법무부), 국공립 및 민간 병원 등
- 시·도, 시·군·구 및 아동복지시설은 해당 아동이 적절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지워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 지원과 함께 유관 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라) 아동 및 부모, 지역사회의 시설 운영 참여 활성화

- 아동 자치회 구성・운영
- (목적) 아동의 인권 의식 향상 및 아동의 시설 참여 기회 확대
- (**구성**) 시설장, 사무국장 및 종사자 대표(1~2인), 부모 및 후원자, 시설내 아동 등
 - 아동 연령,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복지시설에서 자체 구성하되, 가급적 많은 아동 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 적정 규모는 시설별로 자체 판단하되, 10인 이내 소규모 시설의 경우 전체 아동이 참여하도록 함(아동복지시설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별도 기준 제시 가능)
- (운영) 월 1회 이상 개최 원칙, 아동복지시설 운영 현황, 다음월 식단 등 아동의 일 상 생활 관련 사항, 건의 및 애로 사항 등
- 부모, 후원자 등 시설 운영 참여 활성화
-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이 부모와 만남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수시 부모 상담**

이외에 가족회의 주기적 개최(분기 1회 이상)

- 가족회의 논의 사항 예시 : 아동복지시설 운영 현황 및 계획, 해당 아동의 시설내 생활 현황 및 적응 상황, 기타 아동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항
- 가족회의에 최대한 많은 부모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조치
- ※ (예시) 연간 가족회의 개최 계획 수립(매 분기말 3번째주 토요일), 가족회의 개최 1~2전 부모들에게 사전 정보 제공 등
- 가족회의 개최시 부모 미 참여 아동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시설별로 해당 아동들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소풍, 운동회 등) 운영

- 후원자·자원봉사자 등 1:1 멘토-맨티 결연 활성화

-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정기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등과 아동간 애착관계 형성 등을 감 안해 멘토-멘티 결연
- ※ 아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아동과 안정적 관계 형성이 중요한 만큼 멘토 선정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일정기간 이상(예시 : 1년) 지속적·정기적으로 후원·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로 성품, 연령, 성별, 거주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 멘토-멘티 결연시 반드시 아동의 의견을 들어야 함
- 가급적 시설내 모든 아동들을 대상으로 1:1 멘터-멘티 결연을 추진하되, 어려운 경우 아동발달상황, 연령, 부모 여부 등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 설정
- ※ 애착형성이 중요한 저연령 아동, 부모가 없거나 정서 장애가 있는 아동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멘토-멘티 결연 추진

○ 행정사항

-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아동자치회 구성·운영 실적, 가족회의 운영 실적, 멘토-멘티 결연실적 등을 매 반기별로 관할 시군구에 보고(보고 양식 "붙임14" 참조)
- 시·군·구에서는 아동자치회 및 가족회의, 멘토-멘티 구성·운영 실태를 매년 관리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운영 내실화를 위한 의견 제시 또는 개선 권고 등 실시
- ☞ 아동자치회 구성.운영, 가족회의 운영 및 멘토-멘티 결연 등은 시설평가에 반영 추진 예정(관련 지표 및 평가 방법 등은 추후 별도 통지

(마) 종사자에 대한 스트레스 관리

- ▼ 보육사 등 아동을 돌보는 사람의 스트레스는 심리적 부적응과 역할수행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며 심한 경우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어서, 종사자에 대한 스트레스 관리는 반 드시 필요함
- 시·군·구는 해당 지역내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해 연1회 이상 찾아가는 방문 상담 및 교육 등 실시 등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스트레스 측정 및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 정신보건센터는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한 정신 건강 정보 제공, 스트레스 관리 교육, 선별 검사를 통한 우울·스트레스 진단, 고위험군에 대한 상담 및 치료 연계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스트레스 측정 결과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종사자를 대상으로 별도 **힐링캠프** 개최 예정(관련 계획 별도 통보 예정)
- 아동복지시설 장은 **'자가 스트레스 진단 및 관리 방법'**을 시설 종사자에게 알리고,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함
 - 국가건강정보포털, 정신건강증진센터 홈페이지 자료 활용, 본인의 스트레스 정도 측정 가능
 - 직무스트레스 상담기관과 연계를 통해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스트레스 관리 체계 구축
 - ※ 근로자건강센터(1577·1588-6497), 한국건강관리협회(02-2060-2000), 정신건강증 진센터(1577-0199)
 -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결 방법 활용* 및 스트레스 자가진단표를 통한 현재의 감정 상태를 점검(자세한 내용은 "붙임12" 참조)
 - ※ 주위사람과 대화, 운동, 여가·취미활동, 명상, 수퍼바이저를 찾아 문제해결 조력 요청, 스트레스를 자연스럽데 받아들일 수 있는 훈련 등

2. 아동복지시설의 자율적 예방 활동 활성화

- ☑ 아동복지시설내 학대 예방 등을 위해서는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발적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
- ☞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협회와 공동으로 아동학대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 우수 시설 및 종사자 표창, 시설평가 반영 등 인센티브 제공 예정

(가) 아동복지협회 차원의 아동학대 예방 및 인권 증진 활동

○ 아동복지시설 내 자율적 아동 학대 예방 및 인권 증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아동 복지협회내 아동인권센터 및 아동인권위원회 운영

(a) 아동인권위원회

- (목적) 내·외부 전문가 참여에 의해 아동복지시설내 아동 학대예방 및 인권 증진 활동의 내실있는 추진 도모
- (구성) 아동학대 예방 및 인권 관련 전문가, 아동 상담관련 전문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등으로 12명 이내로 구성
- (**운영**) 분기별 1회 이상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아동복지협회 여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 아동복지협회 장이나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역할) 아동복지협회 차원의 아동 학대 예방 및 인권 증진 관련 사항 의견 조정 및 자문, 아동 인권 증진 교육 관련 사항 심의, 기타 아동 인권 관련 사항 심의·조정·자문 등

(b) 아동인권센터

- 아동복지협회는 아동인권 증진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자체적으로 아동인권센터를 운영할 수 있음(상근직원 배치 등)
- (역할) 아동인권 교육 총괄, 아동·종사자 인권 상담 및 자문, 아동학대 사례 접수 및 실태 점검, 아동학대 사례 발굴 및 전파, 아동인권위원회의 운영 지원, 기타 아동학대 예방 및 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 수행

- 아동복지협회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중대한 아동학대 발생 시설이나 학대 예방 노력이 미흡한 시설 등에 대해서는 후원사업 지원제외, 회원 제명처분 등 불이익 조치 가능
 - ※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자체 징계 규정 정비

(나) 아동복지시설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자발적 노력 적극 장려

- 아동복지시설은 시설별 특성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 전개
 - ※ (예시): ① 매월 첫째주 월요일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운영, 학대 예방 실적 공유 및 아동별 상담 결과 분석을 통한 학대 징후 사전 발굴, ② 아동복지시설 현관에 아동인권 증진 관련 현수막 게제 및 아동 인권 보호 관련 뺏지 상시 패용 등

(다) 시설운영위원회를 통한 아동인권보호 활동 활성화

- 시·도, 시·군·구 및 아동복지시설은 시설운영위원회를 통한 시설별 아동학대 예방 및 인권 증진 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침에 기 반영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함
 - 시·군·구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을 시설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
 - ※ 아동복지시설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는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이 위원 으로 위촉·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실시
 - ※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 관련 자세한 사항은 동 지침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 운영(p.18~p.20) 참고
 - 시설운영위원회는 매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매 회의시 아동학대 예방 및 인권 보호 강화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함
 - ※ 주요 보고 사항 : 아동학대 예방 및 인권 보호 관련 실적 및 계획, 거주 아동 생활 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관련 사항,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등
 - 위원별로 제기된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 및 결과는 추후 시설운영위원회 회의시 보고하여야 함
- 아동복지시설 관할 시군구는 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 점검시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참고) 시설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 구성 : 위원장 및 시설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각 대표에서 2명 초과 금지)

- 위원: 시설의 장, 시설 거주자 대표(시설 보호 아동 중 고등학생 이상), 보호자 및 종사자 대표, 시군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후원자 또는 지역주민, 공익단체 추천,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등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위원장 : 위원내에서 호선

- 임기 : 3년

※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17년 아동분야 사업안내(1), p.166 참고

3. 외부 기관 참여를 통한 시설 운영 개방성 제고

(가)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 운영

- (목적) 아동복지시설 운영 개방성을 확대하여,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 하고, 외부인 참여를 통한 학대 예방 및 아동인권 증진 활동을 활성화
- (대상) 지역내 아동위원, 학대전담경찰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인권센터 직원, 전·현직 교사 및 경찰관, 시·도 사회복지위원,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가정위탁지원센터장, 건강가정지원센터장 등으로 신원이 확실하고 아동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을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
- (인원) 아동복지시설별로 최소한 1명 이상의 인권 보호관을 지정·임명, 아동복지 시설과 1:1로 매칭될 수 있도록 조치
- 하나의 시설에 여러명의 인권보호관이 지정된 경우에도 반드시 시설별로 1명의 책임자를 지정하고, 시설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
- (임면) 아동복지시설 관할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
- 인권보호관으로 위촉된 경우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명의의 위촉장 및 신분증 발급
-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은 해당 시설 시설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조 치하여 실질적 활동 보장
- 인권보호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본인이 활동을 그만두기를 원하거나 활동이 저조한 경우, 기타 인권보호관으로서 활동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인권보호관 지정을 취소
-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인권보호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 취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 인권보호관을 재위촉하여야 함
- (주요 역할) 아동복지시설을 방문(수시)하여 시설별 아동보호 실태, 종사자 근무 상태, 시설물 안전 및 급식 현황, 기타 아동보호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을 확인ㆍ 점검(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서 인권보호관 역할 추가ㆍ변경 가능)

- 인권보호관은 시설내 아동 및 종사자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에 전달하거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요청 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음
- 인권보호관은 시설내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해당 시설의 장이나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에 그 내용을 건의할 수 있음
- 인권보호관은 시설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회의 참석 등을 통해 시설내 아동 학대 예방 및 인권 보호 관련 사항을 보고받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 활동

- 시설별로 **월 2회 이상 방문·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월1회 이상 취약시간대**(오후 10시 이후)에 **방문**
- 시설 방문시 항상 관할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신분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시설장이나 종사자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함
- 개별 아동과의 면담이 필요한 경우 아동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가급적 주간에 아동 복지시설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외부 면담이 불가피한 경우 2인 이상이 동행). 이 경우 아동복지시설은 인권보호관의 요청에 따라 아동 면담에 필요한 공간, 면담 내용 비밀 보장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취약시간대 방문시 아동의 활동과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종사자 근무상태 위주로 확인하되, 학대 의심 정황 등으로 아동 숙사 방문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종사자와 동행하거나, 종사자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조치
-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은 아동복지시설 결과 및 활동 내용 등에 대해 월 1회 이상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에 보고하여야함. 다만 아동 학대 의심 사실이나 종사자 근무해태(음주, 근무지 이탈 등), 기타 특이 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에 그 내용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함
- ※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 점검 양식 및 인권보호관 신분증 양식은 "붙임4" 참조

○ 시설운영 모니터링단 운영

- 시·도 및 시·군·구는 필요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 및 자문단으로 구성된 아동복지시설 운영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수 있음
- ※ 아동복지시설이 다수이어서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이 수가 많거나, 하나의 시설이 라도 여러명의 인권보호관이 임명된 경우 운영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음
- 자문단은 아동 인권이나 법률 관련 전문가(아동인권강사, 변호사 등), 영양사(급식 관련 자문), 아동복지관련 교수, 기타 아동복지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아동복지시설 인 권보호관 활동이나 아동복지시설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해 자문이나 지원 등 역할 수행 (아동복지시설 요청에 의한 자문·지원도 포함)

○ 지자체 행정 사항

-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이 위촉·해촉된 경우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는 아동 복지시설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최대한 인권보호관 활동에 협조하도록 조치
-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는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에 대해 인권보호관 활동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 주요 교육 내용 : 아동복지시설 현황, 아동복지시설 아동 인권보호 매뉴얼, 아동 복지시설 인권보호관 역할 및 활동 방법, 기타 아동 학대 예방 및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항 등
-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는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에 대해 아동위원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는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이 시설 방문 동행 등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한 이에 협조하여야 함

(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용 '아동학대 신고함' 설치

○ (목적) 아동 및 종사자 등이 익명으로 편리하게 아동학대 관련 사항 신고, 아동인권 관련 사항 건의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 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

- (설치 주체) 지역내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역내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일시보호시설 등 현황* 을 파악하고, 해당 시설내에 아동학대 신고함을 설치
 -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별 관할지역 내 '아동학대 신고함'설치 대상 시설은 현재 자료 현행화 중이며, 현행화가 완료되는 대로 별도로 통보할 예정임
- 설치시 아동복지시설의 원활한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시·도 또는 시·군·구 아 동복지시설 담당자와 동행 또는 협조를 받아 설치 가능
- 신고함 설치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에 협력을 요청한 경우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 담당자는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 (설치 장소) 아동들이 접근하기 용이하며 시설종사자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과 분리된 곳, 시설 내 CCTV 노출이 되지 않는 곳에 설치
 - ※ 권장장소 : 공용 계단 및 복도, 화장실 입구 또는 내부, 시설 외부 입구 혹은 외부 우편함 주변 등
 - ※ 설치불가장소 : 사무실 내부, 종사자 업무 및 생활공간 주변 등
- (신고함 제작·설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자체 예산으로 제작(구입)
- 신고함 크기 : 가로 25cm 이상, 세로 12cm 이상
- 신고함에 외부에서 내용물을 꺼낼수 없도록 단단한 재질에 손이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만들지 않음.
- 신고함의 내용물이 보이지 않도록 함. ex) 투명한 아크릴 제질 사용 불가
- 아동들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높이에 설치
- 아동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신고함 이름을 부착하고, 학대 신고 요 령 및 절대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내용을 신고함 겉면에 보기 쉽게 표시
- 색상과 글씨체는 아래 기준을 따름(신고함 규격에 따라 크기 등 조정 가능)

- 크기는 신고함의 규격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색상과 글씨체는 아래 기준을 따름.
- (1) 글씨체 : 가변 윤고딕 300 / 배경색 : R0 G127 B226

똑똑, 마음소리함

(2) 글씨체 : 가변 윤고딕 300 / 글자색 : R0 G127 B226

똑똑, 마음소리함

(3) 글씨체 : 가변 윤고딕 300 / 배경색 : R95 G96 B98

똑똑, 마음소리함

<참고 > 아동학대 신고함(예시)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신고함 제작(구입)



● 제작 또는 기성품을 구입할 때, '건의함' 혹은 '소리함'으로 검색하여 디자인 참고가능

○ 아동학대 신고함 운영

- 아동학대 신고함은 번호 자물쇠를 사용하도록 하고, 비밀번호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 및 시·도 또는 시·군·구 아동복지시설 담당자만 숙지(시설장, 시설종사 자 및 관계자, 아동들과는 공유하지 않음)

- 아동학대 신고함 설치시 시설내 아동들에게 사용 안내문 배포 및 식당·거실 등 거주 공가 등에 안내문을 비치하도록 함
- 아동학대 신고함은 시·도 또는 시·군·구 담당자가 수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 는 월 1회 이상 개봉하여 내용물을 확인
- 회수 용지는 5년 이상 보관토록 함
- 시·도 또는 시·군·구 담당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는 신고함 개봉·확인 후 아동학대신고함 점검표를 작성(양식 "붙임 5-2" 참조), 보관
- 아동학대신고함 확인 과정에서 아동학대 관련 사항이 신고된 경우 시·도 또는 시·군·구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시·도 또는 시·군·구 담당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신고함 개봉 결과 아동학대 이외의 사항이 신고·건의 된 경우 시·도 또는 시· 군·구 담당자가 일반 민원에 준하여 처리,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가 개봉한 경 우에는 해당 사실을 시·도 또는 시·군·구 담당자에게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함
- 신고함이 파손 또는 훼손된 경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발견 즉시 시·도 또는 시·군·구 담당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함
- 신고함이 파손 또는 훼손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그 사유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 의심 정황 신고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음

< 참고 > 아동학대 신고함 운영방법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신고함'설치

- 자체예산으로 제작(구입)
- · 설치 시 시설 내 아동들 에게 사용안내문 배포
- 설치결과보고서 작성 · 제출

수시·정기적(월 1회) 방문·확인

- 담당자 지정, 입소아동 상담 시 확인 등 자체 적으로 계획하여 진행
- 회수용지 5년 이상 보관
- · 점검내용 기록보관(보건 복지부 요청 시 제출)

의심정황 발견 시 즉시 조사 실시

· 지자체에 보고하고, 경찰과 협조로 조사 실시

 \rightarrow

○ 행정 사항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신고함을 설치한 경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설치 사진과 함께 아보전 전용 아동학대신고함 설치 결과(양식 "붙임 5-1" 참조)를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함
- 시·도 또는 시·군·구 담당자는 아동학대 전용 신고함 운영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분기별(2,5,8,11월)로 실시('17년은 8월, 11월 실시)

(다) 아동학대 예방 스티커 부착

- (목적) 아동 및 종사자의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아동들이 손쉽게 학대 신고 요령 등을 알게 함으로써 조기 발견 및 아동 학대 예방 효과 제고
- (제작) 1차적으로 보건복지부 및 아동복지시설협회 공동으로 작성·배포('17.3월 중기 배포 완료)
- 아동복지시설 관할 시·도 및 시·군·구는 추가로 스티커를 제작·배포 가능
 - ※ 아동학대 예방 스티커 시안 별도 공문으로 송달 예정
- < 참고 > 아동학대 예방 스티커 시안



- (**설치 및 부착) 아동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 부착
- 거실, 침실, 공용계단 및 복도, 화장실 입구 또는 내부, 공용식당 입구, 시설 외부 입구, 기타 생활공간 주변

○ 행정 사항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아동학대 예방 스티커 운영현황을 분기별로 점검
- 스티커가 훼손된 경우 해당 시설에 추가로 제작·부착하도록 하거나, 해당 시설의 요청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구가 직접 제작·부착할 수 있음

제4부.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신고

1. 신고 의무자

- 「아동학대처벌에 관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의해 **직무상 아동학대 범죄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에 대해, 별도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 아동 인권보호를 위해 아동 학대 의심 신고는 누구나 할수 있음, 아동복지시설내 자원봉사자, 후견인 등 교육시 신고 의무, 요령 등 내용 포함
- ▶ 아동학대처벌법 상 신고의무자(아동학대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 1.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제외)
 - 3.「아동복지법」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4~6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과 그 종사자
 - 7.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8. 성매매피해자보호지원시설•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 9. 성폭력피해상담소•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10~11. 소방구급대 대원 및 응급구조사
 - 1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13.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및 강사 등
 - 15.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 16~17. 장애인복지•정신건강 관련 센터 및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18~19. 청소년시설•청소년단체•청소년 보호 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20.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 등
 - 21.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22.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 23.「아이돌봄 지원법」상의 아이돌보미
 - 24.「아동복지법」상의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 25. 「입양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학대 의심 사례 신고

- ▼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된 경우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시설장.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 뿐만 아니라 아동간 폭력도 포함)
- ☑ 어떤 경우에도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시 되어야 함. 아동이 응급한 상황에 있는 경우 우선 아동의 안전을 확보한 후 신고 절차 진행
- **경찰(112)**, 보건복지콜센터 위기상담대응팀(129), 119 안전신고센터, 지역아동보호전 문기관 행정전화^{*}("붙임 7"), **여성긴급전화**(1366)를 이용하여 24시간 언제든지 필요한 서비스 연계 가능
 - 스마트폰 앱 「아이지킴콜 112」를 통해 112로 바로 전화신고, 문자신고 가능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음

학대 의심 징후 상흔, 증언 등) 발견

전 및 신병 확보
(예: 긴박한 상황인 경우 아동 을 병원에 데려간 이후에 신고)

사후지원 및
서비스 협조

아동학대 신고
(112)
(기능시)
현장조사 및 사례개입
협조

- **스마트폰** 앱「목격자를 찾습니다」아동학대 신고 코너를 활용하여, 사진·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신고 가능
- '아동학대 징후체크리스트("붙임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용 점검표("붙임 2")'를 활용하여 신고 여부를 판단하되, 애매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상담
- 아동학대 신고 전화 멘트(예시)
- ☑ 00보육원(공동생활가정)에 재직하고 있는 보육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 ※ 원칙적으로 신고자의 신원을 밝히되, 밝히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익명 제보도 가능
- 00보육원(공동생활가정)에 생활하는 아동에 대해 ~~의 이유로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신고합니다.
- ▼ 아동의 현재 상황은 ~~~~~ 합니다.※ 아동 안전여부, 응급조치 필요여부, 아동의 심신상태, 가정 상황 등
- ☑ 아동의 인적 상황은 ~~~~ 합니다.
 - ※ 성명, 성별, 연령 등

○ 아동학대 신고시 유의 사항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신고시, 학대 가해자에게 신고 여부를 알리는 등 아동학대 증거가 은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가능한 한 증거 사진 등을 확보함
- 아동이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큰 일이 난 것처럼 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대함
- 성학대의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씻기거나 옷을 갈아 입히지 않음
- 진술의 오염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대에 대해 계속 캐묻거나 유도 질문을 하지 않음
- 신고 후에 신고자나 피해아동의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아동의 취학, 진학, 전학 또는 입소(그 변경을 포함한다)의 사실을 아동학대 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 든지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35조제3항)

3.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보호

-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등에게 아동학대범죄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안됨(「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 제2항)
-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등에 대하여서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7조부터 제13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 제3항)
-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생략 및 가명사용,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금지, 검사는 법원 의 신원관리카드 열람 요청에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 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불허함,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 있는 경우 일정기간 검찰·경찰에 의한 신변안전조치 등
-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아동학대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불이익 조치시 상기 처분 이외에도 시설장 교체 등 행정처분 병과 예정(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62조제2항)
- 공익신고자 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 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공익신고자보호법」 제13조)
 - 판사·검사·경찰서장 등은 범죄신고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 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現在地)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 시 신변안전조치를 하여야 함(아동학대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참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자 보호 관련 주요 법률 현황

「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0조의2(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게 아동학대범죄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3(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의2(불이익조치 금지 위반죄) ①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게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2.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3.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4.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 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5.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6.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신고등과 관련하여 조서나 그 밖의 서류(이하 "조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등에 기재하고 범죄신고자등의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이하 "인적 사항"이라 한다)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조서등에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범죄신고자등으로 하여금 조서등에 서명은 가명(假名)으로, 간인(間印) 및 날인(捺印)은 무인(拇印)으로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명으로 된 서명은 본명(本名)의 서명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⑤ 범죄신고자등은 진술서 등을 작성할 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⑥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인적 사항의 공개 금지)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범죄신고자등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그 인적 사항 또는 범죄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증인 소환 및 신문의 특례 등) ① 제7조에 따라 조서등에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범죄신고자등을 증인으로 소환할 때에는 검사에게 소환장을 송달한다.

② 재판장 또는 판사는 소환된 증인 또는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로 하여금 공판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해당 증인의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경우 재판장 또는 판사는 증인의 인적 사항이 신원확인, 증인선서, 증언 등 증인신문의 모든 과정에서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공판조서에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판장 또는 판사는 범죄신고자등으로 하여금 선서서(宣誓書)에 가명으로 서명·무인하게 하여야 한다.
- ⑤ 증인으로 소환된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범죄신고자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법원에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退廷)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⑥ 재판장 또는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13조(신변안전조치) ①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안전조치"라 한다)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現在地)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익신고자보호법 」

제13조(신변보호조치) ①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7조(보호조치 신청) 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4. 아동학대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

- 지설장 또는 종사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신고하고, 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최대한 행정처분을 경감.면제
- 반면 학대 사실을 알고도 감추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

○ 과태료 부과

- 아동학대처벌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거나 의심이 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한 신고의무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63조 제2항)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시설장, 종 사자 등에 대해서는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고려하여 예외없이 과태료 부 과 조치
- 과태료는 기관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부과됨에 유의

○ 양벌 규정

- 아동학대 발생한 시설의 법인 대표자나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 제 74조에 의해 아동학대 행위자에 준하여 벌금형(징역형은 제외)을 부과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에도 시설장 등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등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 면제
 - ※ 아동복지법 제74조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아동학대 관련 처벌 규정)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학대 행위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처분

- 시설장 또는 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3조 및 별표 13에 의한 행정 처분 조치
- 아동복지시설 관할 시·도 및 시·군·구는 동법에 근거해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행정 처분을 실시하되, 시설장·종사자가 아동 학대 사실을 신고하고, 신속히 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최대한 경감 조치 가능
 - ※ 아동복지빕 시행령 제53조 【별표 13】에 의해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밖 의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설장 교체는 개선 명령, 시설 폐쇄는 시설장 교 체 명령으로 대체 가능
 -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동학대 발생 시설에 대한 행정 처분(p.54)' 참고
- ▼ 처분기준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는 한편, 아동학대 사실 자진 신고 및 아동보호 조치를 신속히 취한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을 경감・면제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 정 추진 중
 - 동 규정 개정전이라도 시·도 및 시·군·구는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 범위내에 서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조치

○ 아동학대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주요 내용>

- (부과주체) 신고의무자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부과대상)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되었음에도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 (대상기간) 최초 아동학대 인지 가능시점부터 아동학대 신고접수일까지의 기간에서 신고의무 이행여부를 판단
- (부과절차) 의견청취, 이의제기, 과태료 부과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 및 행정절차법령 준용
- (과태료 부과)「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	과태료 기준금액		
ਜਦਾਲਜ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법 제63조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단, 불이행 행위가 '13.1.24~'14.9.28.에 발생한 경우	150만원	300만원	300만원
단, 불이행 행위가 '12.8.4~'13.1.23.에 발생한 경우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단, 불이행 행위가 '12.8.3. 이전에 발생한 경우	미부과	미부과	미부과

- (과태료 감액 대상)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1/2범위에서 감액 가능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사회적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6) 「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7)「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제1급~제3급 장애인
 -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급까지 상이등급 판정 받은 사람 등
- (증액대상)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2의 범위에서 증액하되, 상한액(500만원) 초과 불가

제5부. 아동복지시설내 아동학대 징후 발견시 대응

- ☑ 아동학대 징후 발견시 대응 기본 원칙
- ① 모든 판단의 기준은 아동 최우선 보호입니다.
- ② **피해 아동**은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 조치**하고 **아동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도록 최대한 **배려**해야 합니다.
- ③ 학대피해아동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는 반드시 전문기관 등의 도움을 받아 처리합니다.
- ④ 아동간 학대의 경우, 가해 아동도 보호 대상이 되는 아동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해아동에 대해서도 교육이나 심리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실시해야 합니다.
- ⑤ 학대 증거가 은폐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보존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1. 조사 및 판단

(가) 현장 출동 및 조사

- 아동학대 의심 사례 신고를 접수한 경우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야 함(아동학대처벌법 11조)
-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피해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게 제시한 후 아동학대 조사 및 질문 권한이 있음을 고지하고 현장에 출입
- 아동복지시설은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 「아동학대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1조 : ①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이 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 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죄를 범한때에는 그 정한 형의 2분의 1까 지 가중, ③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 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함(사망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현장 출동 직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해당 아동복지시설 관할 시·도 또는 시·군 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협조를 받은 시·도 또는 시·군·구 담당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
-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시·도 또는 시·군·구 담당자 등은 신고인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인임을 알수 있는 사실에 대한 공개 금지(아동학대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 시·도 또는 시·군·구 담당자는 현장 조사시 다음의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① 아동 중심 원칙

- 조사는 반드시 아동 중심으로 아동의 인권을 최대한 배려하며 조사하여야 함
- 절대로 아동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아동이 하기 싫은 대답을 강요 하여서도 안됨
- 신체학대 관련 **신체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아동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고, 여아의 경우는 여경(여상담원)이 확인해야 함

② 분리 조사 워칙

- 아동이 심리적 압박을 받지 않고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아동과 아동학대 행위의심자를 반드시 분리한 후 조사.
-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의 동의를 전제로 피해 아동을 아동학대 쉼터, 해바라기센터 등 타 시설로 보호 조치 후 조사 진행 가능

③ 포괄 조사 원칙

- 신고자가 모든 유형의 학대사실을 신고하기는 어려우므로, 조사자는 신고된 내용 과 더불어 신고되지 않은 내용이 있는지도 조사

④ 대면 조사 원칙

- 주변 진술·정황 등을 통해 학대행위에 대한 객관적 정보 수집이 가능해도, 아동 및 아동학대행위 의심자를 직접 대면하여 조사
- 다만 조사 시기·방법 등은 아동이 심리 상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함

(나) 아동학대 여부 판단

-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보한 증거 자료를 토 대로 아동 학대 여부, 정도, 고의성 여부 등을 판단
- 고의 및 과실의 구분을 위해 학대행위의 반복성, 과거 학대행위 전력 여부, 학대행위 의심자의 학대행위에 대한 은닉, 은폐 시도 여부 등도 반드시 확인
- 학대행위의심자의 실수로 발생한 사건이나 고의적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면 업무 상 과실로 분류
- 실·내외 환경, 위생관리, 차량 안전관리, 시설 관리 등은 관할 지자체 담당자가 점검하도록 하며, 해당 사안이 아동 안전사고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거나 위험 발생 여부를 인지하고도 방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아동학대로 판단

2.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

- ☑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에 대한 보호가 최우선시** 되어야함
 -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자체 등은 아동학대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학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더라도 필요 시 아동보호를 위한 조치를 우선 취해야 함
- ※ **아동보호**는 원가정의 기능회복과 가족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원가정 지원 원칙"이 중심이 되어야 함. **다만** 학대, 질병, 가족해체 등으로 가정이 그 기능을 회복하기 어렵거나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는 대리양육, 가정위탁, 입양, 아동복지시설 입소, 전문기관 치료를 받게 할 수 있음

(가) 사정(査定) 및 사례 관리 실시

- 조사에서 확인된 학대 발생 원인에 대한 대상자별 욕구, 특성, 주변 환경 등 고려, 재학대 예방을 위한 다차원적인 사정(査定) 실시
- 대상자별 아동학대 발생 위험요인을 기초로 각 대상자별 위험요인 파악

(나)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 실시

- 가해자와 피해아동에 대한 즉시 분리 조치 실시
 - 종사자에 의한 아동 학대 의심 사례 적발 시, 시·도 또는 시·군·구 담당자는 가해 종사자에 대해 즉시 직무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의 장에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아동복지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지자체는 등 아동 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해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음
- ☞ 최근 일부 아동복지시설에서 학대 피해 아동과 아동학대 의심 종사자에 대한 분리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분리조치가 미흡한 경우 발견
- 가해자와 분리 조치가 미흡한 경우 학대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신속한 분리 조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할 필요
- ☞ 지자체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종사자가 있는 경우 즉시 직무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시설

소관 법인 등에 대해 관련 징계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

- 시설 소관 법인 등은 지자체의 권고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결과를 즉시 시설 소관 시·도 또는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함
- 시설 소관 법인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 인건비 감액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 아동복지법 제61조 제5호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복지법 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 피해아동의 위험요인 감소를 위한 상담 실시

- 피해아동의 특성 및 학대 후유증 등을 고려하여 개별, 집단, 기관, 주변인 상담

○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연계·지원

- 지자체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상담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서비스를 최우선적으로 연계·지원해야 함
- 우선적으로 고려가능한 서비스는 다음과 같음
 - 심리검사·치료비(복지부·지자체)
 - 정신건강센터를 통한 폭력 피해 아동 상담·의료·심리 치료 지원
 - 성폭력 피해 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전담 의료기관, 해바라기센터(통합지원센터) 등 성폭력 · 폭행 피해자 전문보호 시설 · 서비스 연계 · 집중적 보호 · 치료 서비스 제공(해당 시설 방문이 어려운 피해자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및 치료 동행서비스 제공)
- 시·도 또는 시·군·구 담당자는 피해 아동 또는 부모의 의견을 들어 희망하는 경우 원가정 복귀 또는 타 아동양육시설이나 학대피해아동 쉼터 등 타보호시설 전원 조치 를 취할 수 있음
- 피해아동의 거주지 변경으로 비밀전학 필요 시 절차 지원

< 참고 > 성폭력・폭행 피해자 전문 보호시설・서비스 현황

7	기관(개소수)	지원 내용
	력 피해 상담소 고시설 166개소)	 ○ 성폭력 피해 신고 및 상담 ○ 피해자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동행 ○ 고소와 피해배상 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대해 법률 구조 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연계 ○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교육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인가시설 30개소)		 ○ 피해자 등의 보호 및 숙식 제공 ○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 고소와 피해배상 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대해 법률 구조 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 시설유형별 개소 수 : 총 30개소('16.1. 기준) : 일반(16개), 장애인(8개), 특별지원(4개), 자립지원형(2개)
전담의료기관 (지정기관 344개소)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응급실 원내 조제·투약)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증거채취(응급키트 활용) ○ 성폭력 피해자 치료 ○ 요청 시 사법기관 증언
무료법률구조 (사업수행기관 3개)		 ○ 민사·가사 소송 대리 -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 대리 ○ 형사 소송 지원 - 피해자의 무료변호, 수사의뢰, 수사기관 사건조사 동행, 고소 대리 등 지원 * 수행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통 합 지 원 센 터 (37개)	위기지원형 (16개소) 아동형	 ○ 24시간 응급 상담, 외상치료, 증거 채취 ○ 의료 및 상담 지원 ○ 무료법률변호사 등 법률기관 연계 ○ 피해자 진술조서, 진술녹화, 고소지원, 법적절차 정보제공 ○ 지역 피해자 지원 기관 연계(상담소, 보호시설 등) * 24시간 여성경찰관 및 상담사 상주 ○ 아동 및 청소년, 지적장애인 피해자 장기간 집중 치료

7	기관(개소수)	지원 내용
		○ 심리치료(가족포함), 사례관리
	(8개소)	○ 부모 양육상담 등 부모 교육
		○ 사법절차 모니터링
통합형 ○ 위기지원형 및 통합형 기능 모두 수행 (13개소)		○ 위기지원형 및 통합형 기능 모두 수행
		○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집단상담, 미술
피하	개자 치유 회복	치료, 음악치료, 심신회복캠프, 문화체험 등 각종 프로그램 운
프로그램		영
		* '16년 90여개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사업비 지원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		○ 의료비 지원: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치료, 낙태 및 출산 비용, 성매개 감염 검
		사 등 지원
		○ 간병비 지원 : 입원중인 성폭력 피해자로 가족으로부터 간병지
		원을 받기 어려운 자에게 간병비 보전 지원

- 1차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되, 조치를 취한 후 즉시 지자체 담당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선조치·후보고)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필요한 경우 시·도 또는 시·군·구 담당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연계·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함
- 아동복지시설내 보호 아동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지자체에 있음에 유의. 시·도 또는 시·군·구아동복지시설 담당자는 해당 아동의 보호 현황, 적응 상태, 추가 필 요 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상담·보호조치 변경 등 조치를 취 해야 함
- 지자체 담당자는 피해 아동이 원가정 복귀를 원하는 경우 또는 원가정에 복귀한 경우에도 상담·치료 등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피해 아동이 해당 지자체 관할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아동 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 해당 지역 시·군·구 담당자에게 의뢰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 도록 조치
 - 의뢰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는 해당 가구에 대한 상담(필요시) 및 아동보호전문 기관과 협력해 피해 아동보호(p.38, '우선적으로 고려가능한 서비스' 참고) 등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읍·면·동에 의뢰해 원가정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함

- ※ 원가정 보호 조치: 생계비 추가 지원 등 보호 신설 또는 보호 변경, 긴급 복지 지원, 보육료·아동양육수당·장애아동 수당 등 각종 수당 지원, 의료·주거·교육지원, 드림스타트와 연계한 지역사회내 서비스 연계 등
- □ 해당 가구가 위험도가 높은 경우 희망복지지원단과 연계해 집중적 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통합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피해아동에 대한 보다 충실한 보호를 위해 시·도 또는 시·군·구는 아동에 대해 우선 보호 조치를 실시 한 후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실적 및 현황, 계획 등에 대해 시·도 또는 시·군·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필요한 경우 아동 보호전문기관 담당자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시·도 또는 시·군·구 담당자, 경찰 등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상기 복지서비스 이외에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해 아동 및 가정이 필요한 서비스를 빠짐없이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이때 시·도 또는 시·군·구 담당자는 해당 서비스가 해당 아동들에게 제대로 제 공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해당 서 비스의 제공·연계를 요청할 수 있음
- ※「아동복지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지자체는 등 아동 학대 예방 및 방지 등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음

☑ 참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 조치 주요 내용

-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 조치**(법 제12조)
- 응급 조치 내용 : 범죄행위 제지, 행위자 격리(72시간), 보호시설 인도, 의료기관 인도 등
- 응급조치 집행: 사법경찰관리.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현장에서 아동이 보호를 요청하 거나,「아동학대위험도평가척도」사정 결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상황에 적절 한 응급조치를 실시
- 응급조치 기간 : 아동학대행위자의 격리, 피해아동의 보호시설.의료기관 인도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음. 다만, 검사가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하는 경우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연장됨
- **학대 가해자에 대한 긴급 임시 조치**(법 제13조)

- (개요)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사법경찰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아동학대처벌법 13조)
- (절차) 직원이나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피해아동의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사법경찰관에게 신청
- (내용) 피해아동 또는 가족구성원으로부터 격리,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등
 - ※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아니한 때는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함

○ 임시 조치

- (개요)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이후 법원의 판단을 통해 아동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법 제14조, 제15조)
- (절차) 검사의 직권 또는 사업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의 신청으로 검사가 법원에 청구함
- (종류) 필요적 임시조치 및 임의적 임시 조치로 구분
 - (필요적 임시조치) 응급조치(아동학대범죄 행위 제지 제외)나 긴급임시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후속절차로 필요적으로 임시조치를 청구(아동학대처벌법 15조)
 - (임의적 임시조치)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아동학대처벌법 14조)
- (내용) 피해아동.가족구성원의 주거.학교.보호시설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피해아동.가족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후견인 권한 행사 제한.정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상담.교육위탁,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다) 학대 가해 아동에 대한 지원

- (목적) 최근 일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간 성폭행 또는 폭력 등 학대 사건이 발생 하여,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
- (**방향**) 시·도 또는 시·군·구 담당자, 아동복지시설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이외에 해당 아동을 위해 필요한 보호 조치를 병행해야 함. 또한 가해 아동의 경우에도 보호 대상 아동임에 유의하여 인권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함
 - ※ 특히 아동이 가해자이자 동시에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에 준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지원하도록 함
- (주요 서비스) 심리 검사·치료비 지원,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한 가해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치료·보호 서비스, 여성가족부 관련 인프라와 연계한 재범 방지 교육 실시 등
 - ※ 학대행위자 위험요인 감소를 위한 양육기술 및 방법, 과거력, 폭력에 대한 태도, 인지양상, 분노조절능력, 스트레스 관리 등에 대한 상담서비스 등 제공

▼ 여성가족부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 재범방지 교육

- (개요)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에 대해 적기에 상담치료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년원, 보호관찰소 등과 연계하여 지원
- ※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찾아가는 상담・교육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기 완료
- (내용)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 매뉴얼 교육을 이수한 전문강사가 상담 및 치료교육을 실시하고, 7명 내외로 집단을 구성(필요시 개인상담 병행)

주요 범죄유형	교육의뢰기관	교육지원 방식	교육시간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가해자	아동복지기관, 보호관찰소, 소년원, Wee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지원센터 등		20~40시간 내외

☑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가해청소년과 함께 하는 부모 교육

교육대상	교육의뢰기관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신청
수강명령 또는 교육 의뢰된 성폭력 가해 청소년 및 보호자		청소년·보호자간 의사소통 및 친밀감 형성 훈련 보호자 대상 폭력예방 및 자녀 이해하기 등	5~8시간	탁틴내일 (02-338-8245)

(라) 학대 가해·피해 아동 이외의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

- 시·도 또는 시·군·구 담당자는 학대 가해 또는 피해 아동 이외의 아동에 대해 서도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함
- 시·도 또는 시·군·구 담당자는 중대한 학대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 범위가 광 범위한 경우 해당 시설 아동 전체 및 부모를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함
- 상담 결과 심리 치료 등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대 피해 아동에 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 및 부모가 희망하는 경우 타시설 전원·원가정 복귀 등 조치를 취해야 함
- 아동에 대한 중대한 학대가 발생한 시설로, 종사자의 대다수가 연루되어 있거나 아동이나 부모에 대한 상담 결과 아동 대부분이 타 시설로 전원 또는 원가정 복귀를 희망하는 등 사유로 단기간내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 아동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설 폐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아동복지법」 제53조 및 별표 제13조 1의 다. : 아동에 대한 학대 등 중대한 불법 행위로 인하여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는 1차 위반시에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

3. 사례 종결 및 사후 관리

(가) 재학대 발생 예방 등을 위한 모니터링

- 시·도 또는 시·군·구 담당자 담당자는 직접 또는 주민센터, 드림스타트, 학교, 아동복지시설 시설장 및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 피해 아동 가족구성원 등을 통 해 해당 아동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있는 지 여부, 추가 서비스의 필요 여부, 학대 가해자 등으로부터 보호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함
- 시·도 또는 시·군·구 담당자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즉시 해당 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함

(나) 사례 종결

- (주체) 시·도 또는 시·군·구 담당자, 아동보호전문기관
- (판단시기) 학대 피해 아동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 후 6개월 이내
- (기준・방법) 해당 아동(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가 발생한 시설(시・도 또는 시・군・구)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여 해당 시설의 학대 재발 위험 사유가 해소되었고, 학대 피해 아동 등의 경우에도 학대 후유증이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긍정적 행동 변화가 지속되는 경우 사례 종결 여부 결정
- (절차) 해당 아동에 대한 평가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사례 회의를 실시하여 사례 종 결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중대 사건은 반드시 사례 전문위원회 검토 후 종결
- 시설에 대한 평가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지도·점검 등을 통해 확인, 필요시 아동 보호조치 변경 계획·결과 등과 함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결정

(다) 사후관리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종결 이후에도 재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및 관련자의 안정 유지를 위해 3개월간 사후관리 실시(아동복지법 제28조)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월 1회 이상 시설 또는 가정(원가정 복귀시) 방문 및 전화상담을 통해 재학대 발생 여부 확인하고, 최소 1회 이상은 반드시 피해아동을 직접 대면 상담하여야 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가족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거나 시·도 또는 시·군·구에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도록 협조 요청하여야 함
- ※ 아동이 원가정에 복귀한 경우 해당 시·군·구 담당자, 아동이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 담당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요청을 받은 시·도 또는 시·군·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청 받은 사항 및 요청받지 않더라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가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를 포함하여 관련된 서비스를 연계·제공 하여야 함

☞ 요보호 아동 보호에 대한 최종 책임은 지자체에 있음에 유의

- 시·도 또는 시·군·구 담당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후 관리와 별개로 아동 및 부모를 포함한 가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에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 또는 시·군·구가 아동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력해야함

제6부. 학대 가해자 처벌 및 학대 발생시설에 대한 행정 처분

1. 학대 가해 시설장 또는 종사자에 대한 처벌

(가) 형사처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로 인해 아동을 사망하 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법 제4조),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 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때는 3년 이상의 징역(법 제5조)에 처하되,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함(법 제7조)
- 이와 별개로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라 금지행위를 정하고, 금지 행위 위반시 형사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음

< 참고 >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 행위 및 처벌 규정

、 ロエ / 「10円/1日」 //II/エータ 日/	1011 / 12 11 0
금지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	처벌 규정(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호) 아동 매매	10년 이하 징역
(제2호) 성적 학대행위	10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제3호) 신체적 학대 행위 (제5호) 정서적 학대 행위 (제6호) 보호·양육 등 방임행위 (제7호) 장애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제8호)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9호)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 강·아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제10호) 정당한 권한을 가진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 요구· 약속하는 행위 (제11호) 아동을 위해 증여·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3년 이항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이와 함께 아동복지시설내 아동학대 범죄 발생시 대검찰청의 **강화된 사건 처리 기준** ('16.11월 발표)에 따라 **강력사건에 준하여 수사**하고, **구형량 결정시 가중 처벌**하는 등 등 엄정 수사 방침임

○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아동복지법 제74조)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도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함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 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인정

○ 피해아동 등에 대한 합의 강요 또는 답변 방해 등 금지

- 누구든지 피해 아동이나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하거나 거짓 답변, 답변 방해 등 행위를 할 수 없음
-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나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공무원이나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아동복지시설과「아동복지법」제17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나 질문을 할 수 있음(아동복지법 제66조)
- 「아동복지법」제66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아동복지법 제71조)

(나) 취업 제한

○ 목적

- 아동학대관련범죄자가 아동관련기관에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아동을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하고자 함
- 취업제한 대상 기관:「아동복지법」제29조의3제1항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 함)된 날로부터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복지·가족·어린이집·교육기관·청소 년 등 관련 시설 또는 기관의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가 제한됨

- 취업제한 대상은 상근직 뿐만 아니라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모두를 포함. 특강 강사, 운전기사, 청소노동자, 사회복무요원 등도 포함됨

< 참고 > 아동학대 행위자 취업 제한 기관

구분	기관·시설 현황	비고
아동복지 관련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드림스타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1호
가정폭력관련	•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단 기보호시설, 장기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2호
가족관련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한부모가족복지시설(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 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3호 4호 20호
성매매 및 성폭력 관련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일반 지원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외국인 지원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성폭력 피해자통합지원센터 	5호 6호
어린이집	•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직 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7호
교육기관	 유치원(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학교(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학원, 교습소(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경우) * 학교교과교습학원 전체, 평생직업교육학원 중 성인대상어학·통역·번역·성인고시를 교습과정으로 하지 않는 학원으로 하되 성인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은 제외, 교습소 전체 	8호 18호 19호
의료기관	• 의원(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에 한함	9호
장애인복지시 설	•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 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10호
정신보건관련	• 정신병원,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보건센터	11호
주택관련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관리사무소 * 경비업무 종사자에 한함	12호
청소년관련	• 청소년단체(「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 는 청소년 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13호

구분	기관·시설 현황	비고
	•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 • 청소년이용시설*(문화시설, 과학관, 체육시설, 평생교육기관, 자연휴양림, 수목원, 사회복지관) * 「청소년활동 진흥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문화시설(「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 공연장(종합공연장,일반공연장, 소공연장), 영화상영관, 야외음악당, 박물관, 미술관,화랑, 조각공원, 도서시설(도서관, 문고), 지역문화복지시설(문화의집,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문화보급·전수시설(지방문화원, 국악원,전수회관), 종합시설 - 과학관(「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 평생교육기관(「평생교육법」제2조제2호) *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시설에 한함 - 자연휴양림(산림욕장 포함)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제14조 및 제20조) - 수목원(「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사회복지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5호) - 시민회관·어린이회관·공원·광장·둔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로서 청소년활동 또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시설	14ই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 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15호
	• 청소년보호·재활센터	16호
체육시설	•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골프장, 골프연습장, 농구장, 당구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빙상장, 사격장, 수영장, 스키장, 썰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런장, 체육도장, 축구장, 탁구장, 테니스장, 핸드볼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시설에 한함	17ই
법인	•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위탁운영 법인 * 법인 산하의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 아니라 법인사무를 하는 사람에 한함	21호

- 취업(예정)자 등에 대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확인(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2항 및 제3항)
-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경찰서에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함
 - ※ 기존 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반드시 조회

-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경찰서로부터 통보받은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확인 결과를 1주일 이내에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함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점검·확인**(아동복지법 제29조의4 및 제29조의5)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동 기관에 취업 중인 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해당 시설의 장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확인 여부를 점검하거나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종사자 등을 대상으 로 아동학대 범죄 전력 등에 대한 확인하여야 함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아동 학대 여부 전력 등에 대해 점검하는 경우 직접 경찰서에 전력조회를 요청하여 운영 및 취업여부 등을 점검·확인하되,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됨
- 아동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가 취업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아동관련시설의 장에게 학대 전력자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여야함
- O 처벌 조항(아동복지법 제75조 및 아동복지법시행령 제58조의 별표14)
-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종사자 등에 대한 학대 전력 여부 미조사 시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아동관련기관의 장에 대해 500만원 이내의 과태료 부과(1차 250만원, 2차 500만원)
-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자자체의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거절하는 경우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아동관련기관의 장에 대해 최대 1천만원 이내의 과태료 부과(1차 500만원, 2차 1천만원)
- ☞ 아동복지시설내 아동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폭력·성폭행 전과자 등 아동 복지 시설 취업자에 대한 결격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아동 학대 행위자의 취업 제한 기간도 연장(현행 10년 → 최대 20년)으로 확대할 계획임(현재 아동복지법 개정 추진 중)

(다) 학대 가해종사자에 대한 징계 규정 강화

○ 목적

- 아동복지시설내 아동 재학대를 방지하고, 아동복지시설 자체 노력에 의해 학대 예 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대 가해 종사자에 대한 자체 징계 규정 정비 추진

○ 아동복지시설별 자체 징계 규정 개정 방향

-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경찰 조사에 의해 아동학대 의심 종사자가 적발된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1차적으로 직위해제 등 직무 배제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함
- 아동 학대조사 진행 중이더라도 아동학대 여부가 확실한 경우 또는 경찰·검찰 조사 및 법원 판결 등에 따라 아동 학대 여부가 명확히 확정된 경우에는 학대 정도, 아동 의 피해 정도·범위 등을 감안하여「근로기준법」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소한 무급 정직 이상의 중징계 조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함

○ 행정 사항

- 아동복지시설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는 관련 징계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도록 해당 법인 또는 시설에 권고하고, 실제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가 적절히 이루어 졌는지 여부 등에 대해 관리 감독하여야 함
- 아동복지시설 소관 법인 또는 시설의 장은 시·도 또는 시·군·구 권고에 따라, 또는 자체적으로 징계 규정을 정비하고, 관련 사항을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에 보고
- 자체 징계 규정 정비 여부, 규정 준수 여부 등은 향후 시설 평가, 시설에 대한 행정 처분 기준 적용 등에 반영하여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함

2. 아동학대 발생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행정 처분

(가) 기본 방향

- 아동학대 발생시설에 대한 행정 처분은 아동복지시설이 학대 예방 노력을 유도하고, 학대 발생시 최대한 자진 신고 및 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아동복지시설 관할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경감하되, 아동 학대 사실을 고의로 감추거나, 조사를 방해·회피 등을 한 시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시설에 대한 행정 처분 조치
- 다만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시에도 아동에 대한 보호가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음.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행정 처분시 아동 및 부모의 의사를 반영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간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가 완료된 이후에 행정 처분이 집행 될 수 있도록 함

(나) 학대발생 시설에 대한 행정 처분 기준(아동복지법시행령 제53조 및 별표 13)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시설장, 종사자 등에 의한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 된 경우 1차 위반시 6개월 이내 사업 정지, 2차 위반시 시설 폐쇄 조치를 취함
- 위반 차수에 따른 행정 처분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위반 횟수는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계산
- 위반 행위가 시설장 교체 또는 시설 폐쇄 명령 등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위반의 정도 가 경미하거나 그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 한차례에 한정하여 시설장 교체에 갈음하여 개선 명령, 시설 폐쇄에 갈음하여 시설장 교체 명령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해당 처분은 차수의 산정에 산입하지 않음
 - ※ 아동복지시설의 장이나 종사자, 법인 대표자 등이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고, 아동학대 발생을 자진하여 신고하였거나, 학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 을 기울인 경우 '그밖에 상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여 최대한 행정 처분 을 경감하여 적용

○ 아동학대가 발생한 시설로 법인 또는 시설이 학대 여부 은폐, 장기간 광범위한 범위내에서 학대가 지속되는 등 아동의 피해가 크고,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차 위반 시에 시설 폐쇄 등을 명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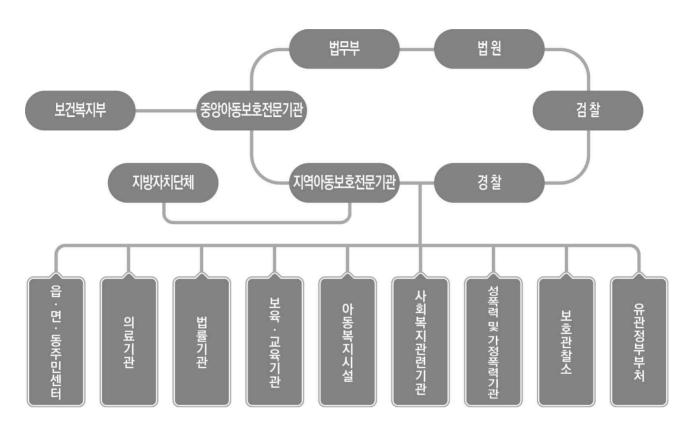
(다) 시설 사업 정지 또는 시설 폐쇄시 아동 보호를 위한 경과 조치

- 사안이 중대하고, 고의로 학대 사실을 숨기는 등 사유로 해당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사업 정지 또는 시설 폐쇄 등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최우 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 시설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는 아동보호 조치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하여, 일정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행정 처분을 사전 예고 할 수 있음
- ☞ 사전 예고후에도 동 매뉴얼에 따른 학대 가해 종사자 직무 배제, 학대 피해 아동 지원 등 조치를 병행해서 실시되어야 함
- ☞ 사전 예고 후 아동 보호가 소홀해 질 우려가 있거나, 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아동복지 시설 소관 법인에 시설장 교체를 요청하거나 관선 시설장 임명 협의, 타 기관에 시설 운영 위 탁(개인운영시설의 경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는 아동 및 부모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아동보호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 아동보호조치 계획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 아동 또는 부모가 원가정 복귀를 원하는 경우 원가정 복귀 조치를 취하되, 아동 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 아동 거주지 시·군·구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는 아동 거주지 관할 읍·면·동과 연계해 원가정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 원가정보호에 필요한 조치(예시) :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 필요한 급여 신청·지급, 긴급 복지 지원,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미혼(부)모 및 한부모 가족 지원, 지역아동센터 연계, 드림스타트·희망복지지원단 연계, 기타 해당 가구의 욕구에 대한 상담 결과를 토대로 통합적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지원 실시

- 아동이 타 지역 시설 전원을 희망하는 경우 시설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는 해당 지역 시설 관할 지자체에 희망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를 의뢰하며, 의뢰받 은 시·도 또는 시·군·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 조 치를 취해야 함
-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소재 지역내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시설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는 해당 지역내 타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 전원, 가정위탁 보호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실시함
 - ※ 아동이 다수이어서 해당 지역내 공동생활 가정이나 가정 위탁 등을 통해 보호가 어려운 경우 해당 지역내 공동생활가정 신설 등 우선 추진, 이 경우 해당 지자 체의 요청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해당 공동생활가정에 대해 최우선적 운영비 등 예산 지원 예정임
- 시설 관할 시·군·구에서 자체 해결이 어려운 경우 1차적으로 시·도, 2차적으로 보건복지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조정을 의뢰할 수 있음
- 협조 요청 또는 조정을 의뢰받은 시·도는 아동들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내 아동복지시설 정·현원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 및 시·군·구에 제공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또는 시·군·구의 요청에 의해 시·도 관할 시· 군·구 및 아동복지시설 간 협의·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가 완료된 후 또는 보호 조치가 확정된 이후 아동복지시설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는 청문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함
-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아동 학대 발생시 사전 신고 및 아동보호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 경우에 시설에 대한 처분을 경감 또는 면제 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
- ※ 지자체에서는 동 규정 개정전이라도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동 매뉴얼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최대한 가벼운 처분이 내려 질수 있도록 조치
- ☞ 다만, 아동 학대를 고의로 은폐하였고, 증대한 학대로 인해 아동 피해가 크고 광범위한 경우에는 1차적으로 시설 폐쇄할 수 있도록 행정 처분 기준을 강화
- ☞ 이밖에 학대 발생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평가시 최저점 부여,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 3년간 지원 제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학대 발생 시설ㆍ시설장.종사자 명단. 이력 등 공표제 실시 예정

제7부.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사건 처리를 위한 기관별 역할

【 아동학대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 】



※ 아동학대사건 업무처리 진행도는 "붙임15" 참조

1. 보건복지부

- 아동학대예방 업무와 관련한 정책, 법·제도 마련 및 개선
- 아동학대예방사업 관련 예산 마련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 및 자격관리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지원
- 아동학대예방 홍보 및 교육 지원
-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 지원
- 아동학대가 발생한 아동복지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조치
-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조치
- 아동학대예방 홍보영상 제작, 배포, 송출
- '아동학대예방의 날(11월 19일)' 및 아동학대예방주간 행사 및 홍보 실시
- 신고의무자 대상 아동학대 신고절차와 방법 등 설명서 작성 및 배포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하여 3년마다 성과평가

2. 법무부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련한 법·제도·정책 마련 및 개선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법교육
-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및 행위자 교정·교화 지원체계 마련
-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 지원
-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진술조력인,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운영
- 각 검찰청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지원 및 총괄

3. 지방자치단체

가. 시・도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
-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신청에 대한 검토 및 지정
-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지도와 감독
-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피해아동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등(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 ※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 및 긴급생계지원 실시
-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 및 제9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필요한 무국적 및 외국국적 피해아동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5조 내지 제17조에 의한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 장애가 있는 피해아동의 경우 아동의 특성에 맞는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시설 설치 및 확충
- 신고의무자에 대한 아동학대예방교육
-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신고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시 동행 협조
-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지도 : 감독
- 사회복지시설에서 아동학대 발생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 및 개입이 원 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 아동학대가 발생한 아동복지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조치
-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조치
- 법원에 아동학대행위자인 친권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 청구

나. 시・군・구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
-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신청에 대한 접수, 검토 및 지정
-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지도와 감독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아동 및 보호자·학대행위자의 신분조회 요청에 대한 협조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또는 교부 등)
-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피해아동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등(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참조)
- ※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복지법 시행령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 정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 및 긴급생계지원 실시
-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 및 제9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필요한 무국적 및 외국국적 피해아동에 대하여 복지법 시행령 제15조 내지 제17조에 의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 장애가 있는 피해아동의 경우 아동의 특성에 맞는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담당 및 장애인 담당 부서가 협의하여 적극 협조
-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시설 설치 및 확충
- 신고의무자에 대한 아동학대예방교육
-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신고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시 동행 협조
-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지도 감독
- 사회복지시설에서 아동학대 발생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 및 개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 아동학대가 발생한 아동복지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조치
-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조사 동행 및 행정조치
- 아동학대 발생가정 및 부모로부터 격리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국민 기초생활수급권자 우선 선정(2017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71)
- 아동학대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 법원에 아동학대행위자인 친권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청구

다. 읍 ·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관할 지역 내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에 대해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 피해아동 및 보호자·학대행위자의 신분조회 요청에 대한 협조(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또는 교부 등)
-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신고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시 동행 협조

4. 아동보호전문기관

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정책제언 및 협력체계 구축
- 아동학대예방사업 관련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지원 및 직무교육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리
- 아동학대예방 관련 홍보

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상담
- 현장출동 및 조사업무 수행
-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지원
 - 행위자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 신청,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등
 - 진술조력인, 국선변호인 선정신청 지원 및 신뢰관계인 동석 등
 - 그 외 필요 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아동복지법 제29조)
- 아동학대범죄 행위 제지 및 아동학대행위자 격리, 피해아동을 보호시설 및 의료기관 으로 인도하는 등 응급조치
- 아동보호사건송치시 아동보호사건 처리에 대한 의견 개진
- 임시조치, 조건부 기소유예, 보호처분 등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위탁 수행
- 아동학대예방관련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 학대피해아동 쉼터 등 운영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입력 및 보존
- ※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처리 진행도는 "붙임16" 참조

5. 경찰청 및 경찰

가. 경찰청

-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과 관련한 법·제도·정책 마련 및 개선
- 학대전담경찰관 직무교육
- 아동학대 관련 예산 운영, 아동학대예방 홍보 및 교육 지원
-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 지원

나. 경찰(지방경찰청 및 경찰관서)

-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아동학대 신고접수(112)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관련사실 통보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출동 요청 시, 동행출동 및 조사업무 수행
- 아동학대범죄 행위 제지 및 아동학대행위자 격리, 피해아동을 보호시설 및 의료기관 으로 인도하는 등 응급조치
-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결정 및 집행
-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신청
-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응급조치결과보고서 접수
- 피해아동 등으로부터 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신청 접수
- 아동학대사건 송치시 아동보호사건 처리에 대한 의견 개진
- 피해아동에게 필요한 절차 및 지원서비스(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안내
-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준수여부를 조사,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부과 요청
- 검사 주관 사건관리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전문위원회 참석
- 아동학대신고자에 대한 신분비밀 보장 및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안전 조치
- 아동학대 인식전환을 위한 대내외 교육 및 홍보
- 지역사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통합솔루션팀' 운영

6. 여성가족부

- 가정폭력예방과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 가정폭력예방과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내 피해아동 보호지원
-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성매매피해시설상담소 종사자, 해바라기센터(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성폭력피해상 담소 종사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청소년시설 및 단체 종사자, 청소년보호센터 및 재활센터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신고의무자 교육 및 홍보
-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 지원

7. 교육부 및 교육청(교육지원청)

가. 교육부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인권교육 내용 포함 : 교과 및 범교과학습 주제에 반영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교육지원
- 초·중등학교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학원강사에 대한 신고의무자 교육 및 홍보
-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접근 및 위협에 대한 예방 협조
 - 피해아동의 입학, 전학 등의 신속한 조치와 편의도모(아동복지법 제29조 제5항)
 -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관련 정보 비밀유지
-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 지원

나.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교육지원
- 초·중등학교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학원강사에 대한 신고의무자 교육 및 홍보
-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접근 및 위협에 대한 예방 협조
 - 피해아동의 입학, 전학 등의 신속한 조치와 편의도모(복지법 제29조 제5항)
 -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관련 정보 비밀유지
- 보육·교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 학대발생 보육·교육시설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행정징계

8. 검찰

-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청구
-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수사 및 처분방향 결정
- 수사기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필요한 자료 요청
- 아동학대사건 수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의견 청취
- 아동학대행위자인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 대한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청구
-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상담·치료· 교육 명령
- 피해아동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아동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법원에 신청

- 수사시 아동학대행위자의 위협으로부터 피해아동,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등의 신변안전 확보
- 성폭력·아동학대 전담검사제도, 진술조력인제도 및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 적극 활용

9. 법원

- '아동 최선의 이익 우선 원칙'에 따른 사법절차 진행
- 피해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결정,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의 상담 ·교육 위탁 시 이행사항 확인 및 수행기관의 의견 청취를 통한 성행교정 상황 모니터링
-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결정 및 그 이행사항 모니터링
- 피해아동의 법률적 보호,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등과 관련하여 아동보호 전문기관과의 협조
-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형사판결, 보호처분 결정, 친권의 상실 선고·후견인 변경 심판, 후견인의 지정 등
- 재판시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아동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등의 신변안전을 확보하고 피해자 지원제도 활용
 - 성학대로 고소·고발된 사례에 대하여 증인으로 소환된 범죄신고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판 조서에 해당 증인의 인적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하여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증인의 신변을 보호 가능 (성폭처벌법 제23조, 특신보법 제11조 참조)
 - 법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범죄신고자 등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과정에서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에게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요청 가능(성폭력처벌법 제 23조, 특신보법 제13조 참조)
 - 증인신문시 증인으로부터 법정 외 제3의 장소에서 신문을 받거나 비디오 등 중계 장치 또는 차폐시설을 이용한 신문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받은 경우 이를 신중히 고려(형소법 제165조, 제165조의 2)
 - 피해아동에게 배정된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조인, 진술조력인 등을 통해 피해사실, 아동 현재 상황 및 특성에 대해 확인 가능
 - 학대행위자가 공판조서 및 재판확정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요청할 경우, 아동학대행위자가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증인의 인적사항이 조서에 기재되었다면 그 인적사항 부분에 대한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음

10. 의료기관

- 의료행위 시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에 대해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 의료인은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로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 신고의무자군에 대한 신고의무자 교육
- 아동학대 판정을 위한 피해아동, 가족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의학적 진단 및 피해 아동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증언 진술

11. 보육 및 교육기관

- 아동학대의심사례에 대한 조기 발견 및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 초·중등학교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학원강사,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 처벌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로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 신고의무자군에 대한 신고의무자 교육
-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경찰이 교육 및 보육기관에 방문하여 현장조사(아동상담)를 실시할 경우 적극 협조
- 피해아동과 부모에 대한 치료적 개입 및 협조
- 피해아동의 교육 및 보육기관 내 생활, 가족력 등 관련자료 제공
- 학대행위자의 예방, 치료계획을 위한 지원
- 부모로부터 격리보호 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협력
 - 피해아동의 입학, 전학 등의 신속한 조치와 편의도모(아동복지법 제29조 제5항)
 - 학대행위자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관련 정보 비밀유지
- 아동, 학부모, 교사 대상의 아동학대예방 홍보 및 아동의 권리와 학대예방 등에 관한 교육 실시

12. 아동복지시설

- 아동학대의심사례에 대한 조기 발견 및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 아동복지시설종사자는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로서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 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함
- 신고의무자군에 대한 신고의무자 교육
- 시설 내 보호 또는 이용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예방

-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사법경찰이 아동복지시설에 방문하여 현장조사(아동상담)를 실시할 경우 적극 협조
- 피해아동에 대한 치료적 개입 및 협조
- 피해아동의 아동복지시설 내 생활, 가족력 등 관련자료 제공
- 부모로부터 격리보호 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협력
- 아동보호전문기관 통합사례관리회의 협조 및 장기격리보호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 시설 내 보호 또는 이용 아동, 학부모,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예방 홍보 및 아동의 권리와 학대예방 등에 관한 교육 실시

13. 사회복지 관련 기관

- 아동학대의심사례 발견 시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는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로서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함
- 신고의무자군에 대한 신고의무자 교육
-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를 위한 전문치료프로그램 제공
- 아동학대 발생가정 및 아동학대 고위험군 가정에 대한 지원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동학대의 감소 및 예방 도모
-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아동학대예방 활동 전개 및 지역주민교육 등
- 기관 내 보호 또는 이용 아동, 학부모, 시설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홍보 및 아동의 권리와 학대예방 등에 관한 교육 실시
- 아동보호전문기관 통합사례관리회의 협조 및 아동학대 종결사례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14. 성폭력 및 가정폭력피해자 지원기관

- 아동학대의심사례 발견시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종사자는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 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로서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 는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함

- 신고의무자군에 대한 신고의무자 교육
-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를 위한 전문치료프로그램 제공
- 기관 내 보호 또는 이용 아동, 학부모, 시설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홍보 및 아동의 권리와 학대예방 등에 관한 교육 실시
- 사례개입 시 연계기관
 - 해바라기센터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에 대한 의료·상담·수사·법률지원· 심리치료 등
 - 1366 여성긴급전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긴급상담·구조·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여성이나 동반가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 상담, 수사기관 및 법정 동행, 심리정서 지원, 의료 기관 연계 의료지원, 예방교육 등
 -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숙식 등 주거지원, 재활 지원 등

15. 법률조력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 대한변호사협회 :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법률자문 및 소송지원

[붙임]

1. 아동학대 징후 체크리스트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www.korea1391.org)에 게재되어 있음

신체적 징후	행동적 징후
【신체학대】	【신체학대】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손발이 차거나 붉게 부어오른 상태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비슷한 크기의 반복적으로 긁힌 상처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담배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자국, 회음부에 있는 화상자국, 알고 있는 물체모양(다리미 등)의 화상자국, 회복속도가 다양한 화상자국 입, 입술, 치은, 눈, 외음부 상처 긁히거나 물린 자국에 의한 상처 손목이나 발목에 긁힌 상처, 영유아에게 발견된 붉게 긁힌 상처 성인에 의해 물린 상처 성인에 의해 물린 상처 대뇌 출혈, 망막출혈, 양쪽 인구 손상, 머리카락이 뜯겨나간 두피 혈종 등을 동반한 복잡한 두부손상 고막 천공이나 귓불이 찢겨진 상처와 같은 귀 손상 골격계 손상, 시간차가 있는 골절, 치유 단계가 다른 여러 부위의 골절, 복합 및 나선형 골절, 기존상 골절, 회석추 손상(특히, 여러 군데의 골절), 영상 유아의 긴해에서 나타나는 간단 근라는 대퇴골절 막하 출형의 방사선 사진, 골단 분리, 골막 변형, 골막 석회화 간혈종, 간열상, 십이지장 천공, 궤양 등과 같은 복부손상 폐 좌상, 기흉, 흉막삼출과 같은 흉부손상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양육자에 대한 두려움 • 집(어린이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

신체적 징후	행동적 징후
【정서학대】	【정서학대】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신체발달저하	 특정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행동장애(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신경성 기질 장애(놀이장애) 정신신경성 반응(히스테리, 강박, 공포) 언어장애 극단행동, 과잉행동, 자살시도 실수에 대한 과잉 반응 양육자와의 접촉에 대한 두려움
【성학대】	【성학대】
①신체적 지표	①성적(性的) 행동지표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 ·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 · 명백하게 성적인 묘사를 한 그림들 · 타인과의 성적인 상호관계 · 동물이나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 ②비(非)성적인 행동지표 · 위축, 환상, 유아적 행동(퇴행행동) · 자기 파괴적 또는 위험을 무릅쓴 모험적인 행동 · 충동성, 산만함 및 주의집중장애 · 혼자 남아 있기를 거부 또는 외톨이 ·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 방화/동물에게 잔혹함(주로 남아의 특징) · 비행, 가출 · 약물 및 알콜 남용 · 자기 파괴적 행동(자살시도) · 범죄행위 · 우울, 불안, 사회관계의 단절 · 수면장애 · 유뇨증/유분증 · 섭식장애(폭식증/거식증) · 야뇨증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저조한 학업수행
[방 임]	(방 임)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비위생적인 신체상태 예방접종과 의학적 치료 불이행으로 인한 건강 상태 불량 아동에게 악취가 지속적으로 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비행 또는 도벽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함 지속적인 피로 또는 불안정감 호소 수업 중 조는 태도 잦은 결석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용 점검표

- 아동학대 체크리스트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무 중에 학대로 의심 되는 아동을 조기발견하기 위해 활용
- 1개 문항 이상 "예"라고 체크된 경우, 아동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로 반드시 신고

연번	평 가 항 목	평기	' ⊦ √
1	사고로 보이기에는 미심쩍은 상흔이나 폭행으로 보이는 멍이나 상처가 발생한다.	예	아니오
2	상처 및 상흔에 대한 아동 및 보호자의 설명이 불명확하다.	예	아니오
3	보호자가 아동이 매를 맞고 자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체벌을 사용한다.	예	아니오
4	아동이 보호자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당한다.	예	아니오
5	아동이 보호자에게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당한다.	예	아니오
6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를 보인다.	예	아니오
7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를 보인다.	예	아니오
8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한다.	예	아니오
9	성학대로 의심될 성 질환이 있거나 임신 등의 신체적 흔적이 있다.	예	아니오
10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및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을 보인다.	예	아니오
11	자주 결석하거나 결석에 대한 사유가 불명확하다.	예	아니오
12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거나 예방접종이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다.	예	아니오
13	보호자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표현하거나 집(보호기관)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한다.	예	아니오
14	아동이 히스테리, 강박, 공포 등 정신신경성 반응을 보이거나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모습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	예	아니오
15	"아동학대 점검표" 1-14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그 외의 학대로 의심되는 경우 (학대 의심 사항 :	예	아니오

^{□ 1}개 문항 이상 "예" 라고 평가된 경우, 아동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으므로 ☎ 112로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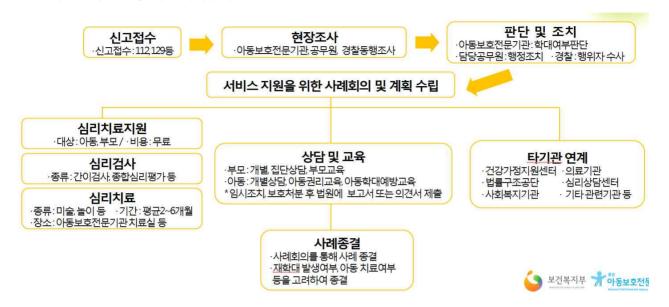
[자료제공: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상담

^{-「}아동학대 점검표」는 학대로 의심되는 아동에 대한 상담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3. 피해아동 보호 절차(아동학대사례 개입과정)

□ 아동학대사례 개입과정



□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신고접수

- · 24시간 신고전화 운영(112, 129)
- · 일반상담 접수 및 타기관 연계
- · 아동학대의심사례 접수 후 현장조사 실시
- · 신속히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통보
 - √ <u>신고시</u> 아동을 포함한 **학대에 관한 가능한 많은 정보(아동의 현 거주지, 행위자와의 관계 등)** 를 알려주는 것이 아동학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됨.

현장조사

- ·상담원 2인 1조 출동 · 경찰 우선/동행출동 · 학대발생지 및 관련 장소 내 조사
- ·피해아동 조사 및 증거수집 · 신고자, 목격자, 이웃 등 관련인 조사 및 증거수집
- · 아동학대혐의 판단(일반사례/조기지원사례/아동학대혐의사례)

□ 조치결정

피해아동 보호조치

- ·아동학대 위험도 및 안전 평가
- ·피해아동 응급조치 집행
- ·보호시설 및 의료시설로 아동 인도 ·응급조치 결과보고서 경찰 송부
- ·응급조치 실시에 따른 <u>지자체</u> 통보
- ·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 ·피해아동보호명령 취소 및 종류 변경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따른 보조인 및 후견인 선임
-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결정에 대한 항고 등

학대행위자임시조치

- · 아동학대 재위험도 평가 · 긴급임시조치 신청 · 임시조치 신청요청·청구
- · 임시조치 결정에 관한 의견서 제출 • 고수고발

□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 · 피해아동 : 상담, 의료지원(통원 및 입원), 심리치료, 학습지원, 수사 및 증거 지원,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
- · 학대행위자: 보호처분, 임시조치 등의 결과 상담, 교육프로그램 운영, 심리치료, 의료지원(통원 및 입원), 가정지원(경제 및 가사지원) 등
- ·가족: 상담, 가족치료, 가정지원(경제 및 가사지원), 원가정복귀를 위한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 등

사후관리

- ·지원종결사례에 대한 통합사례관리회의 개최 ·사후관리 연계기관 결정
- ·사후관리 서비스제공 모니터링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4.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 임명 현황 보고 및 점검·신분증 양식

4-1.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 점검 양식

(시설명 :)

				전 건	결과 특이 사학	<u></u> 핫
점검일시	점검	점검내용			인권보호 관련	
ם ה ב יו	장소	T T 1 0	아동학대	대 징후		기타
					개선필요 사항	
지자체 관	계자 의견					
0						
O						
					지자체 관계자 혹	작인
				담당	팀장	· _ 과장

4-2.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 신분증 양식

< 전 면 >

인권보호관증 사진 지자체 마크 지자체명

〈 후 면 〉

인권보호관증번호 : 동작구 00-00

소속 : 동작경찰서
직위/직급 : 경정
성명 : 김철수
생년월일 : 1979.3.12
담당시설명 : 하늘보육원
위촉기간 : 0000.00.00 ~
0000.00.00

4-3.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 지정·임명 결과 보고 양식

○ 임명대상 시설 : 아동양육·아동보호치료·아동일시보호시설

(시·도명 :)

3773	J 21-9	인권보호관	인권보호관	임명된		
시군구별	시설별	임명일	활동일	인권보호관의	직업	
oo 시(군· 구)						
oo 시(군 ·구)	••••					
	••••					
oo 시(군 ·구)	••••					
	••••					
	••••					
oo 시(군 ·구)	••••					
	••••					
oo 시(군 ·구)						
	o 인권보호관	임명대상 시설	: 총 00개(A)			
	o 인권보호관이 임명된 시설 : 00개(B)					
	o 인권보호관이 미임명된 시설 : 00개(B)					
계	o 인권보호관 임명률 : %(B/A)					
	o 인권보호관이 미임명된 시설별 사유 :					
	시설 :					
	o 인권보호관	: 미임명된 조치	완료 예정일 :			

5. 아보전 전용 아동학대신고함("똑똑 마음 소리함) 설치 및 관리

□ 아동학대신고함 제작

- 신고함 크기 : 가로 25cm 이상, 세로 12cm 이상
- **잠금장치 설치** : 번호 자물쇠를 사용하도록 하고, 비밀번호는 아보전 담당자만 숙지하고 시설담당자 혹은 아동들과 공유하지 않음.
- 제작비용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자체 예산으로 제작(구입)
 - * 수용비 및 수수료, 홍보사업비 등
- 기타 고려사항
 - 신고함에 손이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만들지 않음.
 - 신고함의 내용물이 보이지 않도록 함. ex) 투명한 아크릴 제질 사용 불가
- '똑똑 마음 소리함' 이름 부착
 - 크기는 신고함의 규격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색상과 글씨체는 아래 기준을 따름.
- (1) 글씨체 : 가변 윤고딕 300 / 배경색 : R0 G127 B226

똑똑, 마음소리함

(2) 글씨체 : 가변 윤고딕 300 / 글자색 : R0 G127 B226

똑똑, 마음소리함

(3) 글씨체 : 가변 유고딕 300 / 배경색 : R95 G96 B98

똑똑, 마음소리함

○ '아동학대신고함' 설치 장소

- 아동들이 접근하기 용이하며 시설 내 종사자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과 분리된 곳, 시설 내 CCTV 노출이 되지 않는 곳에 설치
- 아동들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높이에 설치
- 권장장소 : 공용 계단 및 복도, 화장실 입구 또는 내부, 공용 식당 입구, 시설 외부 입구 혹은 외부 우편함 주변
- 설치불가장소 : 사무실 내부, 종사자 업무 및 생활공간 주변
- '**아동학대신고함' 제작** : 아래 예시를 참조하여 제작·구입







● 제작 또는 기성품을 구입할 때, '건의함' 혹은 '소리함'으로 검색하여 디자인 참고가능 ○ **'아동학대신고함' 설치 결과 보고** : "다-1" 양식을 이용,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보고

<5-1, 아동학대신고함 설치 결과보고서 >

기관명 : ○○아동보호전문기관

순 번	시설명	설치일	설치자	설치장소	담당자
1	○○복지센터	17.05.01	000	1층 강당 입구	000

○ '아동학대신고함' 점검표 작성・보고

- 아래 양식 이용하여 매월 1회 이상 시설 내 아보전 전용 '아동학대 신고함'을 점검하고, 아보전 내부보고를 완료할 것

〈5-2, 아동학대신고함 점검표〉

시설명 :

최소이	점검일	청소 고소	하미이지사하 기수	결	재
회수일	심심될	회수 건수	학대의심상황 건수	담당자	관장
17.05.01	17.05.02	○건	없음 / ○건		

6.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신고의무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 내용·시간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 시행령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2.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 3. 피해아동 보호 절차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⑤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은 집합 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6., 2016.5.29.>

-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 2.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 4. "아동학대범죄"라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 (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 다)의 죄
 -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상해 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 마.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 치상)의 죄
 - 바.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최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 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최
 - 사.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 아.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 자.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최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차.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 (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카.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 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하.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 4의2.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이란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말한다.

- 4의3.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이란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을 한 자를 말한다.
- 5. "아동학대행위자"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말한다.
- 6.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 7. "아동보호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이하 "보호처분"이라 한다) 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 8.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 9.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말한다.
- 9의2. "가정위탁지원센터"란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말한다.
-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11.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6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2조제4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8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 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 ②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제1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 병과한다.
 - ③ 법원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 1. 아동학대 행동의 진단 · 상담
- 2. 보호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게 하기 위한 교육
- 3. 그 밖에 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⑦ 형벌과 병과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9조(친권상실청구 등) ① 아동학대행위자가 제5조 또는 제6조의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검사는 그 사건 의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검사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요청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그 처리 결과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3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 1.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 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7.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 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의 장과 그 종사자
 - 10.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13.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 14. 삭제 <2016.5.29.>

-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17.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20.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 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 1.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 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7.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 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의 장과 그 종사자
 - 10.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13.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 14. 삭제 <2016.5.29.>

-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좋사자
-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20.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 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일 : 2017.5.30.] 제10조

제10조의2(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게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5.29.]

제10조의3(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5.29.]

- **제10조의4(고소에 대한 특례)** ①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아동학대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와 공동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아동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 ② 피해아동은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피해아동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5.29.]

- 제11조(현장출동) ①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리나 그 소속 직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②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아동학대행위자

-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출입이나 조사를 하는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협박이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다만, 피해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 1.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 2.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
 - 3.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 4.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 ②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 규정에 따라 피해아동을 분리·인도하여 보호하는 경우 지체 없이 피해아동을 인도받은 보호시설·의료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검사가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연장된다.
 - ④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응급조치를 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응급조치결과보고서에는 피해사실의 요지, 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응급조치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⑥ 누구든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협박이나 응급조치를 저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제19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이나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변호사(제16조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제48조 및 제49조를 제외하고는 이하 같다)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임시조치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4조(임시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1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조(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의 청구) ① 사법경찰관이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하였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가 행하여졌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때에는 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긴급임시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4항에 따라 작성된 응급 조치결과보고서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 제16조(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 등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는 "아동학대범죄"로, "형사절차"는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로, "피해자"는 "피해아동"으로 본다.
- 제17조(준용) 아동학대범죄의 조사·심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부 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아동학대범죄"로, "피해자"는 "피해아동"으로 본다.

제4장 아동보호사건

- **제18조(관할)** ① 아동보호사건의 관할은 아동학대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 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으로 한다.
 - ② 아동보호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단독판사(이하 "판사"라 한다)가 한다.
-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①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1.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정구성 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 2.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3.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4.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 5.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 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 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 ③ 판사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임시조치가 청구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

- 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⑤ 제1항제6호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아동학대행위자를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 ⑥ 제1항제6호에 따라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에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부과할 사항을 그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①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 및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⑧ 제1항제5호에 따른 상담 및 교육을 행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등은 그 결과보고서를 판사와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⑨ 제1항 각 호의 위탁 대상이 되는 상담소,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제7항에 따른 통지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20조(임시조치의 고지) 법원은 제1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아동학대행위자의 보조인(제44조에서 준용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보조인이 없는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항제7호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변호사 등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제21조(임시조치의 집행) ① 판사는 제1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임시조치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가정보 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제22조(임시조치의 변경) ① 아동학대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 ② 판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 ③ 판사는 임시조치를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제1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 또는 검사,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 또는 제19조제1항 각 호의 위탁 대상이 되는 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그 임시조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 제23조(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 ① 판사는 제19조제1항제4호의 임시조치로 인하여 피해아동에게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는 경우 그 임시조치의 기간 동안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임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 ② 제1항의 경우 판사는 해당 피해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피해아동,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등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그 선임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수 있다. <개정 2016.5.29.>
 - ③ 법원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피해아동,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등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 ④ 제1항에 따라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피해아동 소유 재산의 보존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⑤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민법」 제949조를 준용한다.
- ⑥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선임, 사임 및 변경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 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24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25조(검사의 결정 전 조사) ①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아동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 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아동학대행위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아동학대행위자의 경력, 생활환경, 양육능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검사에게 통보하여 야 하며,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관계인에게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그 인권을 존중하며,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 ④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 대하여 제1항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검사는 제1항의 결정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 결과 및 아동보호전문기 관의 장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 등을 참고하여 피해아동 보호와 아동학대행위자의 교화·개선에 가장 적합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제26조(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아동학대범죄를 수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 치료 또는 교육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 1. 사건의 성질 · 동기 및 결과
 - 2.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 3.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性行) 및 개선 가능성
 - 4. 원가정보호의 필요성
 - 5.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
- 제27조(아동보호사건의 처리) ①검사는 아동학대범죄로서 제26조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 2.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아동학대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 **제28조(검사의 송치)** ① 검사는 제27조에 따라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제18조제 1항에 따른 관할 법원(이하 "관할 법원"이라 한다)에 송치하여야 한다.
 - ②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와 그 외의 범죄가 경합(競合)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사건만을 분 리하여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 제29조(법원의 송치)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 제30조(송치 시의 아동학대행위자 처리) ①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를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검사의 이송지휘를 받은 때부터 관할 법원이 있는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에서는 24시간 이내에, 그 밖의 시·군에서는 48시간 이내에 아동학대행위자를 관할 법원에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 ② 제1항에 따른 인도와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203조 또는 제205조의 구속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③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효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한 때에 상실된 것으로 본다.
- 제31조(송치서) ①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경우에는 송치서를 보내야 한다.
 - ② 제1항의 송치서에는 아동학대행위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직업, 피해아동과의 관계 및 행위의 개요와 가정 상황을 적고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32조(이송) ① 아동보호사건을 송치 받은 법원은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한 조사·심 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사건을 즉시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 다.
 -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이송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첨부하여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 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및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3조(보호처분의 호력)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1조제1호에 따라 송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4조(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 ②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해당 아동보호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때부터 시효 진행이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진행된다.
 - 1. 해당 아동보호사건에 대하여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확정된 때
 - 2. 해당 아동보호사건이 제41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27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송치된 때
 - ③ 공범 중 1명에 대한 제2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을 미친다.
-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① 아동학대범죄의 수사 또는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진술조력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그 기관장, 상담소 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제10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

- 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 ③ 피해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아동의 취학, 진학, 전학 또는 입소(그 변경을 포함한다)의 사실을 아동학대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6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 1.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3.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 6.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 8.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 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을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다른 친권자나 친족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으로 인도할 수 있다.
 - ④ 판사가 제1항제3호의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 보호처분의 기간 동안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의 선임 등에 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 ⑤ 법원은 제1항에 따라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호관찰관 및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하는 보호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상담소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⑥ 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의 교정에 필요 한 참고자료를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 ⑦ 제1항제6호의 감호위탁기관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그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제37조(보호처분의 기간)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 처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항 제4호의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각각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38조(보호처분 결정의 집행)** ①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보호처분의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보건법」을 준용한다.
- **제38조(보호처분 결정의 집행)** ①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보호처분의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7.5.30.] 제38조

- 제39조(보고와 의견 제출 등) ① 법원은 제36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을 결정한 경우에는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집행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②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경우 외에도 아동학대행위자가 제36조제1항제4호부터 제 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호처분 의 이행 실태에 대한 보고서 또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0조(보호처분의 변경)** ① 법원은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1회에 한정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제36조제1항제 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기간은 2년을, 같은 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4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 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1조(보호처분의 취소) 법원은 보호처분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제36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 또는 검사, 피해아 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호관찰관이나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1. 제28조에 따라 검사가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
 - 2. 제29조에 따라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에 이송
- **제42조(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그 밖에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호관찰관이나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 **제43조(비용의 부담)** ①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시조치 또는 제3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는 위탁 또는 보호처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아동학대행위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 ② 판사는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제1항 본문에 따른 비용의 예납(豫納)을 명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가 부담할 비용의 계산, 청구 및 지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44조(준용)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보호처분 및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 등에 대하여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의2, 제19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9조까지, 제42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가정보호사건"은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폭력행위자"는 "아동학대행위자"로, "피해자"는 "피해아동"으로, "가정폭력범죄"는 "아동학대범죄"로 본다.
- **제45조(항고와 재항고)** ① 제19조의 임시조치(연장 또는 변경의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36조의 보호처분, 제40조의 보호처분의 변경 및 제41조의 보호처분의 취소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하여야 한다.

- ② 법원이 제44조가 준용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에 따라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할 때에는 검사,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 사는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 ③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④ 임시조치·보호처분의 항고·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가정보호사건"은 "아동보호사건"으로 본다.

제5장 피해아동보호명령

- 제46조(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관할) ①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아동학대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아동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 ②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판사가 한다.
- 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①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 령을 할 수 있다.
 - 1.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3.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4.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 5.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 6.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 7.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 8.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 9.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 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 ③ 판사가 제1항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관할 법원에 대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④ 판사가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동안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자의 선임 등에 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 ⑤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48조(보조인)** ①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에 대하여 각자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②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과 그 기관장 및 제16조에 따른 변호사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
 - ③ 변호사(「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이하 제49조에서 같다)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하거나 제2항에 따른 보조인이 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 판사는 언제든지 제3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보조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제2항에 따른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심급별로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인이 되

고자 하는 자와 피해아동ㆍ아동학대행위자 사이의 신분관계 또는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의 직위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⑦ 제1항에 따른 보조인은 독립하여 절차행위를 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보조인은 독립하여 피해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절차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49조(국선보조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직계친족·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 1.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 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 2.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 3. 그 밖에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가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변호사를 아동학대행위자의 보조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보조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50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및 취소와 변경) ①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 ②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2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 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 **제51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①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3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총 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2조(피해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 ①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임시로 제4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보호명령"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②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 다만,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판사가 제4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임시보호명령을 한 경우 그 임시보호명령의 기간 동안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자의 선임 등에 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 ④ 임시보호명령의 집행 및 취소와 변경에 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임시보호명령"으로 본다.
- **제53조(이행실태의 조사)** ① 관할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보호관찰관 등으로 하여금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이행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게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관할 법원은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제54조(병합심리)** 법원은 사건의 관련성이 인정되어 병합하여 심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아동보 호명령사건과 아동보호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 제55조(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교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에게 아동학대사 건의 조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56조(준용) ①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조사·심리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및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가정보호사건"은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폭력행위자"는 "아동학대행위자"로, "피해자"는 "피해아동"으로, "가정폭력범죄"는 "아동학대범죄"로, "보호처분"은 "피해아동보호명령"으로 본다.
- 제57조(항고와 재항고) ①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제51조에 따른 연장의 결정을 포함한다) 및 제50조에 따른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 제52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피해아동, 아동학대행위자,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또는 보조인은 가 정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하여야 한다.
 - ②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또는 아동보호전문 기관의 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8조(위임규정)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

- **제59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학대행위자는 2년 이하의 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 1.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 위자
 - 2.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
 - 3.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제52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이 결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
 -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8조제1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0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또는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61조(업무수행 등의 방해죄) ①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 또는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 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③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62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① 제35조제1항에 따른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보조인, 진술조력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그 기관장, 상담소 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제10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보조인인 변호사에 대하여는 「형법」 제317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6.5.29.>
 - ②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 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 ③ 제35조제2항의 보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2조의2(불이익조치 금지 위반죄)** ①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게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2.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3.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4.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 별 또는 조치
 - 5.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6.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본조신설 2016.5.29.]

-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판사의 아동보호사건의 조사 · 심리를 위한 소환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 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에 따른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제64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직원 및 진술조력인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4172호, 2016.5.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제2조(피해아동 보호의 원칙) 검사, 사법경찰관리, 보호관찰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그 직원 등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처분 또는 청구 등을 할 경우에는 피해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7.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보건복지부 설치)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60개소(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역	 기 관 명	운 영 기 관	설치장소(홈페이지)
		굿네이버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66길 19(역삼동)
000		791-161-	(http://korea1391.go.kr)
	서울특별시	서울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34길 124(수서동)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복지센터	(http://child.seoul.go.kr)
	서울특별시동부	서울특별시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69길 106(장안동)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상담치료센터	http://www.dbnawoori.seoul.kr)
	서울강서	굿네이버스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7가길 12, 2층(가양동, 시정헌빌딩)
	아동보호전문기관	A 1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http://www.gangseo.goodneighbors.kr/gngangseo)
	서울은평	굿네이버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210, 4층(응암동)
서울	아동보호전문기관	A 1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http://eunpyeong.goodneighbors.kr/gneunpyeong)
(8)	서울영등포	굿네이버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 27가길 5, 4층(대림동, 태안빌딩)
	아동보호전문기관	79110	(http://yongdungpo.goodneighbors.kr/gnyongdungpo)
	서울성북	굿네이버스 	서울특별시 성북구 <u>동소문로3길 36, 1층(타운힐빌딩)</u>
	아동보호전문기관	74141-	(http://seongbuk.goodneighbors.kr/gnseongbuk)
	서울마포	세이브더칠드런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로 46, 401호(신수동)
	아동보호전문기관	제기프의 필드한	(http://mapo.sc.or.kr)
	서울동남권	굿네이버스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32길 6, 5층(문정동)
	아동보호전문기관	74141-	(http://gangdong.goodneighbors.kr/gngangdong)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서구 까치고개로 183 (아미동2가)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종합센터	(http://adong.busan.go.kr)
	부산동부	인천사회사업재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506, 영플리젠시 903호
부산	아동보호전문기관	한선사회사 표세된	(http://dbchild.saem.or.k)
(4)	부산서부	인천사회사업재단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268 화명대림타운상가 405, 406호
	아동보호전문기관		(http://dbchild.saem.or.kr)
	부산남부	사회복지법인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로 141번길 11
	아동보호전문기관	<u>동성원</u>	
	대구광역시	어린이재단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302, 2층(동인동3가)
	아동보호전문기관	, , , , ,	(http://www.dg1391.or.kr)
대구	대구남부	굿네이버스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319, 2층(송현동)
(3)	아동보호전문기관		(http://ndaegu.goodneighbors.kr/gnndaegu)
	대구북부	한국SOS어린이마을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25길 12(산격동)
	아동보호전문기관		(http://www.sosdb1391.or.kr)
	인천광역시	세이브더칠드런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899(주안동)
	아동보호전문기관		(http://icchild.sc.or.kr)
인천	인천북부	굿네이버스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883, 4층(부평동, 재현빌딩)
(3)	아동보호전문기관		(http://ninchon.goodneighbors.kr/gnninchon)
	인천남부아동보호	홀트아동복지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904, 4층(간석동)
	전문기관	2 10 1 1-1	220 1 1 20 1 20 1 20 1 20 1 20 1 20 1 2
광주	광주광역시	어리어케다.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216(쌍촌동)
(2)	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재단	(http://www.cyber1391.or.kr)

지역	기 관 명	운 영 기 관	설치장소(홈페이지)
	<u>빛고을</u>	<u>사회복지법인</u>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 132
	<u>아동보호전문기관</u>	<u>동명회</u>	(http://www.bitabo.co.kr)
대전	대전광역시	굿네이버스	대전광역시 중구 어덕마을로 156(중촌동)
(1)	아동보호전문기관 울산광역시		(http://daejon.gni.kr)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3길 21(성안동)
울산	아동보호전문기관 울산남부	세이브더칠드런	(http://www.ulsan.sc.or.kr/)
(2)		세이브더칠드런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355번길 23(삼산동)
	<u>아동보호전문기관</u> 경기도	- n.1.a.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225번길 20(영화동)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http://suwon.goodneighbors.kr/gnsuwon)
	경기북부	굿네이버스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196 4층 (도림빌딩)
_	아동보호전문기관	741410	(http://uijeongbu.goodneighbors.kr/gnuijeongbu)
	경기성남	굿네이버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06, 2층(태평동)
_	아동보호전문기관	X 11 1 1 -	(http://sungnam.goodneighbors.kr/gnsungnam)
	경기고양	굿네이버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557번길 11, 7층(행신동, 삼정프라자)
-	아동보호전문기관	21.11.1	(http://sungnam.goodneighbors.kr/gnsungnam)
	경기부천	세이브더칠드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279 서호빌딩 4층 405호(중3동)
	아동보호전문기관		(http://bucheon.sc.or.kr)
 경기	경기화성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1334, 4층(봉담읍, 송현빌당)
(12)		레크 H 크고 레고	(http://hwaseong.goodneighbors.kr/gnhwaseong)
	경기남양주 아동보호전문기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248번길 39, 204호(금곡동, 다남빌당) (http://www.nyj1391.or.kr)
-	아 아 보고 선생기년 안산시	시됩니시에단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112, 203호(고잔동, 슈마프라자)
	인간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세이브더칠드런	(http://ansan.sc.or.kr)
-	경기용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서로9 505호(구갈동)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http://yongin.goodneighbors.kr/gnyongin)
-	 경기시흥	- n.l.a.	경기도 시흥시 비둘기공원7길 83 2층(대야동)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http://siheung.goodneighbors.kr/gnsiheung)
	경기평택	동방사회복지회	경기도 평택시 소사1길 33 동방평택복지타운(소사동)
_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위		, ,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천로392번길 17(연무동)
	강원도	어린이재단	강원도 춘천시 성심로47번길 35(후평1동)
	아동보호전문기관	기단이재인	(http://www.1391.org)
	강원동부	어린이재단	강원도 강릉시 솔올로 5번길 33, 2층(교통, 반트스포트센터빌딩)
강원	아동보호전문기관	16 1/116	(http://www.kd1391.or.kr)
(4)	강원서부	굿네이버스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469번길 7(명륜동)
_	아동보호전문기관*		(http://wonju.goodneighbors.kr/gnwonju)
	강원남부	굿네이버스	강원도 동해시 부곡3길 20-9, 2,3층
	아동보호전문기관		(http://donghae.goodneighbors.kr/)
	충청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202번길 66-1(율량동) (http://cheongju.goodneighbors.kr/gncheongju)
충북		원주카톨릭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 242, 4층(청전동, 제천시보건복지센
(3)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회	时) (http://www.1391sos.kr)
	충북남부		추처부디 오치구 오치스 무저1기 10(오치스)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법인 명지원	(http://www.cbnb1391.org)
シ1.1	충청남도	الدامالية على المالية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 224(성정동)
충남 (3)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http://chonan.goodneighbors.kr/gnchonan)
	충청남도남부	굿네이버스	충청남도 논산시 중앙로384번길(취암동)

지역	기 관 명	운 영 기 관	설치장소(홈페이지)
	아동보호전문기관		(http://www.goodneighbors.kr/boryeong)
	충청남도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상하천로 50 충남보훈회관 1층(신경리) (http://hongseong.goodneighbors.kr/gnhongseong)
	전라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77(서서학동) (http://jeonju.goodneighbors.kr/gnjeonju)
전북 (3)	전라북도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112, 4층(갈산동) (http://iksan.goodneighbors.kr/gniksan)
	전라북도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41(향교동) (http://namwon.goodneighbors.kr/gnnamwon)
	전라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재단	전라남도 순천시 삼산로 92-5(용당동) (http://www.e1391.or.kr)
전남 (3)	전남서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635, 3층(석현동) (http://mokpo.goodneighbors.kr/gnmokpo)
	전남중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전라남도 나주시 예향로 4073, 2층(송월동) (http://jnjb.goodneighbors.kr/gnjnjb)
	경북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우봉복지재단	경상북도 경주시 금성로395번길 24(성건동) (http://i1391.or.kr)
경북	경북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그리스도의교육 수녀회	경상북도 안동시 밤적골길 20(율세동) (http://www.ad1391.org)
(4)	경북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이로2번길 12, 3층 (대잠동) (http://pohang.goodneighbors.kr/gnpohang)
	경북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경상북도 구미시 문장로 110(도량동) (http://gumi1391.or.kr)
경남	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인애복지재단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558(회원동) (http://www.kn1391.or.kr) (거제분소)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중앙로 13길 24, 2층 고현동주 민센터 내(고현동) (양산분소)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209, 재향군인회관 3층(북부동)
(3)	경남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인애복지재단	경상남도 진주시 모덕로 181번길 6(상대동) (http://www.gnw1391.or.kr)
	김해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인애복지재단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385번길 8, 2층(부원동) (http://www.ghl391.or.kr)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서고도시	어린이재단	제추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로 59(노형동) (http://www.ij1391.or.kr)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동로 8731, 2층(서귀동)
(2)	서귀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법인 제남	(www.sgp1391.org)

^{*} 시·군·구에서 설치(안산, 용인, 시흥, 원주 등 4개소)

8.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기관

(2017.03월 현재)

	·) 걸 연새)
<u>구분</u>	<u>기관·시설 현황</u>	비고
아동복지 관련	•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드림스 <u>타트)</u>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 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u>1ই</u>
<u>가정폭력관련</u>	•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단기보호시설, 장기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u>2ই</u>
<u>가족관련</u>	•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한부모가족복지시설(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u>3호</u> 4호 20호
성매매 및 성폭력 관련	•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일반 지원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외국인 지원 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 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성폭력 피해자통합지원센터	<u>5ই</u> <u>6ই</u>
어린이집	•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 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u>7ই</u>
교육기관	• 유치원(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 학교(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 학원, 교습소(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경우) * 학교교과교습학원 전체, 평생직업교육학원 중 성인대상어학·통역・번역·성인고 시를 교습과정으로 하지 않는 학원으로 하되 성인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은 제외, 교습소 전체	<u>8호</u> <u>18호</u> <u>19호</u>
의료기관	• 의원(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에 한함	9 <u>ই</u>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u>10ই</u>
<u>정신보건관련</u>	• 정신병원,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보건센터	<u>11ই</u>
<u>주택관련</u>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관리사무소 * 경비업무 종사자에 한함	<u>12ই</u>
	• 청소년단체(「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 보호 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u>13호</u>
<u>청소년관련</u>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 · 청소년이용시설*(문화시설, 과학관, 체육시설, 평생교육기관, 자연휴양림, 수목원, 사회복지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문화시설(「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 공연장(종합공연장, 일반공연장, 소공연장), 영화상영관, 야외음악당, 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도서시설(도서관, 문고), 지역문화복지시설(문화의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문화보급·전수시설(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종합시설 	<u>14উ</u>

<u>구분</u>	기관·시설 현황	비고
	- 과학관(「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 평생교육기관(「평생교육법」제2조제2호) *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시설에 한함 - 자연휴양림(산림욕장 포함)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4조 및 제20조) - 수목원(「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사회복지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5호) - 시민회관·어린이회관·공원·광장·둔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로서 청소년활동 또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시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u>15호</u>
	• 청소년보호·재활센터	<u>16ই</u>
<u>체육시설</u>	•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골프장, 골프연습장, 농구장, 당구장, 롤러스케이트 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빙상장, 사격장, 수영장, 스키장, 썰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축구장, 탁구장, 테니스장, 핸드볼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시설에 한함	<u>17ই</u>
법인	•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위탁운영 법인 * 법인 산하의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 아니라 법인사무를 하는 사람에 한함	<u>21ই</u>

9. 전국정신건강증진센터 현황

시.도	시,군구	구분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서울		광역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21길 6(논현동,하이코)5-7층	02-3444-9934
서울	종로구	기초	종로구정신건강증진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15길 10	02-745-0199
서울	중구	기초	중구정신건강증진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6길 16 중림종합복지센터 3층 중구정신건강증진센터	02-2236-6606
서울	용산구	기초	용산구정신건강증진세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329, 2층(보건분소)	02-2199-8370
서울	성동구	기초	성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금호로 124	02-2298-1080
서울	광진구	기초	광진구정신건강증진센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 110 중곡종합건강센터 4층	02)450-1895
서울	동대문구	기초	동대문구정신건강증진센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릉로 81(청량리동) 홍릉문화복지센터 2층	02)963-1621
서울	중랑구	기초	중랑구정신건강증진센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238	02-3422-5921 ~3
서울	성북구	기초	성북구정신건강증진센터	서울 성북구 화랑로 63	02-969-9700
서울	강북구	기초	강북구정신건강증진센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9길 154	02-985-0222
서울	도봉구	기초	도봉구정신건강증진센터	서울시 도봉구 방학로3길 117(쌍문동) 도봉구보건소내 1층	02-900-5783~ 4
서울	노원구	기초	노원구정신건강증진센터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	02-2116-4591
서울	은평구	기초	은평구정신건강증진센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34길 11, 3층(불광동,보건분소)	02-353-2801
서울	서대문구	기초	서대문구정신건강증진센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90, 보건소별관 우리들 4층	02-337-2165
서울	마포구	기초	마포구정신건강증진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로4길 15	02-3272-4937
서울	양천구	기초	양천구정신건강증진센터	양천구 목동서로 339 지하1층	2061-8881
서울	강서구	기초	강서구정신건강증진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561(염창동)	02-2600-5926
서울	구로구	기초	구로구정신건강증진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28길 35-2	02-861-2284~ 6
서울	금천구	기초	금천구정신건강증진센터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123길 11 5층	02-3281-9314
서울	영등포구	기초	영등포구정신건강증진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123 영등포구보건소 내 지하1층	02-2670-4793
서울	동작구	기초	동작구정신건강증진센터	서울특별시동작구남부순환 로2025 3층	02-588-1455
서울	관악구	기초	관악구정신건강증진센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 3동 4층	02-879-4911
서울	서초구	기초	서초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02-2155-8215

				염곡말길 9	
서울	강남구	기초	강남구정신보건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9길 38	02-2226-0344
서울	송파구	기초	송파정신건강증진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산로 5	02-421-5871
서울	강동구	기초	강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45	02-471-3223
부산		광역	부산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부산 남구 수영로 299	242-2575
부산	중구	기초	부산중구정신건강증진센터	부산 중구 흑교로 48, 2층	051.257.7057
부산	서구	기초	부산서구정신건강증진센터	부산 서구 부용로 30 서구보건소202호	051-246-1981
부산	동구	기초	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	부산 동구 구청로 1. 동구청 보건소3층	051-911-4600
부산	영도구	기초	영도구정신건강증진센터	부산 영도구 동삼북로2, 주공1단지아파트 상가 2층 209호	051-404-3379
부산	부산진구	기초	부산진구정신건강증진센터	부산부산진구시민공원로30 부산진구청별관건강증진센 터내2층	051)638-2662
부산	동래구	기초	동래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부산 동래구 명륜로187번길 56	051-507-7306
부산	남구	기초	남구정신건강증진센터	부산남구 유엔평화로4번길61	626-4660,1
부산	북구	기초	부산북구정신건강증진센터	부산 북구 만덕대로 89번길 9북구보건소덕천지소 3층	051-334-3200
부산	해운대구	기초	해운대구정신건강증진센터	부산 해운대구 양운로37번길 59	051-741-3567
부산	사하구	기초	사하구정신건강증진센터	부산 사하구 장림번영로 41 한국메디컬빌딩 5F	051)265-0512
부산	금정구	기초	금정구정신건강증진센터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77, 별관 5층	051-518-8700
부산	강서구	기초	부산강서구정신건강증진센 터	부산 강서구 공항로811번길 10 강서구보건소2층	051-970-3417
부산	연제구	기초	연제구정신건강증진센터	부산 연제구 연제로2(연제구보건소3층)	051-861-1914
부산	수영구	기초	수영구정신건강증진센터	부산 수영구 수영로 637-5, 수영구보건소 본관 2층	051)714-5681
부산	사상구	기초	사상구정신건강증진센터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196번길 51	051-314-4101
부산	기장군	기초	기장군정신건강증진센터	부산 기장군 기장읍 용수로 4	051)727-5386
대구		광역	대구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대구남구두류공원로17길33 라파엘관5층 33	053-256-0199
대구	중구	기초	중구정신건강증진센터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20길 25, 304호	053-256-2900
대구	동구	기초	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	대구 동구 신평로 16길 57-2	053)983-8340
대구	서구	기초	서구정신건강증진센터	서구 북비산로71길 7	053-564-2595
대구	남구	기초	남구정신건강증진센터	대구남구영선길34 5층	053)628-5863
대구	북구	기초	북구정신건강증진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성북로 59, 2층	053-353-3631 ~2
대구	수성구	기초	수성구정신건강증진센터	대구 수성구 수성로 213	053-756-5860
대구	달서구	기초	달서구정신건강증진센터	대구 달서구 학산로 50 월성문화관 내	053.637.7851
대구	달성군	기초	달성군정신건강증진센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비슬로 458길 6-2, 3층	053)643-0199

인천		광역	인천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774번길 24	032)468-9911
인천	중구	기초	인천중구정신건강증진센터	인천광역시 중구 참외전로 72번길 21 중구보건소 5층	0327906091~5
인천	동구	기초	인천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	인천광역시 동구 인중로 377	032-765-3690
인천	남구	기초	인천남구정신건강증진센터	인천광역시 남구 독정이로 95	032)421-4045-
인천	연수구	기초	인천연수구정신건강증진센 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뫼로13	032-749-8171 ~7
인천	남동구	기초	인천남동구정신건강증진센 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819, 문화빌딩 6층	032-465-6412
인천	부평구	기초	인천부평구정신건강증진센 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33	032-330-5602
인천	계양구	기초	인천계양구정신건강증진센 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서로8 장기보건지소 3층	032-547-7087
인천	서구	기초	인천서구정신건강증진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탁옥로 39	032-560-5006
인천	강화군	기초	인천강화군정신건강증진센 터	인천광역시 강화읍 충렬사로26-1	032-932-4093
광주		광역	광주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27, 한일빌딩 5층	062-600-1930
광주	동구	기초	광주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1 동구보건소 2층	062-233-0468
광주	서구	기초	광주서구정신건강증진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172번길 32	062-350-4195
광주	남구	기초	광주남구정신건강증진센터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1	062-654-8236
광주	북구	기초	광주북구정신건강증진센터 (본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43. 2층	062-267-5510
광주	광산구	기초	광산구정신건강증진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239-1, 3-4층(송정동)	062-941-8567
대전		광역	대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488번길 9, 2층	042-486-0005
대전	동구	기초	대전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	대전광역시 동구 현암로 22(삼성동)	042-673-4619
대전	중구	기초	대전중구정신건강증진센터	대전광역시 중구 수도산로 15	042-257-9930
대전	서구	기초	대전서구정신건강증진센터	대전광역시서구만년로74 (만년동)	042-488-9741
대전	유성구	기초	대전유성구정신건강증진센 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유성대로 730번길 51	042-825-3527
대전	대덕구	기초	대전대덕구정신건강증진센 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로 38번길 55, 별관2층(석봉동)	042-931-1671
울산		광역	울산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105, 2F	052)716-7199
울산	중구	기초	울산중구정신건강증진센터	울산 중구 외솔큰길 225, 중구보건소 3층(남외동)	052-292-2900
울산	남구	기초	울산남구정신건강증진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중로 132	052-227-1116
울산	동구	기초	울산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	울산 동구 봉수로 155	052-233-1040
울산	북구	기초	울산북구정신건강증진센터	울산 북구 산업로 1018	052-288-0043
울산	울주군	기초	울주군정신건강증진센터	울산광역시울주군 삼남면서향교1길 67-12(2층)	052-262-1148
세종	세종시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세종시조치원읍수원지1길1	044-861-8521

				6세종시립의원2층	
경기		광역	경기도정신건강증진센터	1011 7017 1017	
경기	수원시	기초	수원시통합정신건강센터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101,1층(조원동 장안구청)	031-253-5737
경기	수원시	기초	수원시아동.청소년정신건 강센터	수원시 팔달구 동말로 47 번길 17	031-242-5737
경기	수원시	기초	수원시정신건강증진센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89 2층	031-247-0888
경기	수원시	기초	수원시노인정신건강센터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396	031-273-7511
경기	성남시	기초	성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성남시수정구 수정로 218 5층	031)754-3220
경기	성남시	기초	성남시소아청소년정신건 강증진센터	성남시수정구 수정로 218 4층	031)751-2445
경기	부천시	기초	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	부천시 성오로 172, 오정 보건센터 3층	032-654-4024
경기	용인시	기초	용인시정신건강증진센터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 58 번길 11 기흥구보건소 3층	031-286-0949
경기	안산시	기초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031-411-7573
경기	안양시	기초	안양시정신보건센터	안양시 만안구 문예로 48	031-469-2989
경기	평택시	기초	평택시정신건강증진센터	평택시 평택5로 56	031-658-9818
경기	시흥시	기초	시흥시정신건강증진센터	시흥시 호현로 55	031-316-6661
경기	화성시	기초	화성시정신건강증진센터	화성시 향남읍 470, 화성 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 내 1층	031-369-2892
경기	광명시	기초	광명시정신건강증진센터	광명시 오리로 613	02-2680-5548
경기	군포시	기초	군포시정신건강증진센터	군포시 군포로 221 군포 시정신건강증진센터	031-461-1771
경기	광주시	기초	광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광주시 파발로 194	031-762-8728
경기	김포시	기초	김포시정신건강증진센터	사우중로108	031-998-4005
경기	이천시	기초	이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	이천시 이섭대천로 1119 이천상공회의소 2층	031-637-2330
경기	안성시	기초	안성시정신건강증진센터	안성시 강변로74번길 18 (도기동)	031-678-5361
경기	오산시	기초	오산시정신건강증진센터	오산시 경기동로59	031-374-3032
경기	하남시	기초	하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하남시 대청로 9, 4층	031-793-6552
경기	의왕시	기초	의왕시정신보건센터1997	의왕시 오봉로 34	031-458-0682
경기	여주시	기초	여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여주시 세종로 338번지	

					031-886-3435
경기	양평군	기초	양평군정신건강증진센터	양평군마유산로17	031-770-3526
경기	과천시	기초	과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과천시 관문로69 보건소1 층	02-504-4440
경기	고양시	기초	고양시정신건강증진센터	고양시 주교동 고양시청 로 13-6 현대빌딩 2층	031-968-2333
경기	남 양 주 시	기초	남양주시정신건강증진센 터	경춘로 1037 시청 신관 1 층	031-592-5891
경기	의 정 부 시	기초	의정부시정신건강증진센 터	의정부시 범골로131	031-828-4567
경기	파주시	기초	파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파주시 봉천로 68	031-942-2117
경기	구리시	기초	구리시정신건강증진센터	구리시 건원대로 34번길 84	031-550-8677
경기	양주시	기초	양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양주시 삼숭로 61번길 10	031-840-7320
경기	포천시	기초	포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포천로 1612 보건소 3층	031-532-1655
경기	동 두 천 시	기초	동두천시정신건강증진센 터	동두천시 중앙로 167	031-863-3632
경기	가평군	기초	가평군정신건강증진센터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155-15	031-581-8881
경기	연천군	기초	연천군정신건강증진센터	연천군 전곡읍 은대성로 95	031-835-8106
강원		광역	강원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 터	춘천시 춘천로 306-5	033-251-1970
강원	춘천시	기초	춘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	춘천시 효제길 35	033-244-7574
강원	원주시	기초	원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원주시 원일로 139	033-746-0198/
강원	강릉시	기초	강릉시정신건강증진센터	강릉시 강릉대로 313번길 6 동부보건지소	033-651-9668
강원	동해시	기초	동해시정신건강증진센터	동해시 효자로 683 (효가동)	033-533-0197
강원	태백시	기초	태백시정신건강증진센터	태백시 태백로 905	033-554-1278
강원	속초시	기초	속초시정신건강증진센터	속초시 중앙로 17번길 6	033-633-4088
강원	삼척시	기초	삼척시정신건강증진센터	삼척시 척주로 76	033-574-0190
강원	홍천군	기초	홍천군정신건강증진센터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로5	033-435-7482
강원	횡성군	기초	횡성군정신건강증진센터	횡성군 횡성읍 횡성로 379	033-345-9901
강원	영월군	기초	영월군정신건강증진센터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46-43	033-374-0199
강원	철원군	기초	철원군정신건강증진센터 설원	철원군 갈말읍 군탄로16	033-450-5104
강원	화천군	'ㅡ 기초	화천군정신건강증진센터	화천군 화천읍 강변로111	033-442-4424
강원	양구군	' 기초	양구군정신건강증진센터	양구군양구읍관공서로42	033-480-2789
강원	인제군	 기초	인제군정신건강증진센터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40번길 34	033-461-7427
강원	고성군	기초	고성군정신건강증진센터	고성군 간성읍 수성로 30	033-682-4020
강원	양양군	기초	양양군정신건강증진센터	양양군 양양읍 양양로 9-5	033-673-0197/ 0199
충북		광역	충청북도광역정신건강증진	충북 청주시 서원구	043-217-0597

			센터	1순환로 771	
충북	청주 상당	기초	청주시상당청원정신건강증 진센터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단재로 480	043-201-3128
충북	청주 서원	기초	청주시서원흥덕정신건강증 진센터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235, 4층	043-291-0199
충북	충주시	기초	충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충북충주시국원대로782층	043-855-4006
충북	제천시	기초	제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 242, 3층	043-646-3074
충북	보은군	기초	보은군정신건강증진센터	충북 보은군 보은읍 동광길 45	043-544-6991
충북	옥천군	기초	옥천군정신건강증진센터	충북 옥천군 옥천읍 관성로 53	043-730-2199
충북	영동군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충북 영동군.읍 반곡동길7	043-740-5610
충북	증평군	기초	증평군정신건강증진센터	충북 증평군 증평읍 보건복지로 64-1	043-835-4276 ~4279
충북	진천군	기초	진천군정신건강증진센터	충북 진천군 중앙북1길 11-8 보건소별관2층	043-539-8387
충북	괴산군	기초	괴산군정신건강증진센터	충북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2길 27-10, 2층	043-832-0330
충북	음성군	기초	음성군정신건강증진센터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석로 74	043-872-1883
충북	단양군	기초	단양군경신건강증진센터	충북 단양군 단양읍 삼봉로53	043-420-3257
충남		광역	충청남도광역정신건강증진 센터	충남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별관 301호	041633-9183
충남	천안시 서북구	기초	천안시정신건강증진센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서부8길 29	041-578-9709 ~11
충남	공주시	기초	공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공주시 주미길44	041-852-1094
충남	보령시	기초	보령시정신건강증진센터	충남 보령시 보령남로 234	041-930-4184
충남	아산시	기초	아산시정신건강증진센터	충남 아산시 번영로224번길20	041 537 3460
충남	논산시	기초	논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논산시 논산대로 382(관촉동)	041-746-8121 ~7
충남	계룡시	기초	계룡시정신건강증진센터	계룡시 장안로 54(금암동)	042-840-3573
충남	당진시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당진시 서부로 56	041-360-6093
충남	금산군	기초	금산군정신건강증진센터	충남 금산군 금산읍 금산로 1559	041-751-4721
충남	부여군	기초	부여군정신건강증진센터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205	041-830-2504 ~6
충남	서천군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서천군 서천읍 사곡길26	041-950-6741
충남	청양군	기초	청양군정신건강증진센터	충남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 7길 54	041-9404546
충남	홍성군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충남홍성군홍성읍내포로13 6번길30	041-630-9014
충남	예산군	기초	예산군정신건강증진센터	충남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147	041-339-8057
충남	태안군	기초	태안군정신건강증진센터	충남 태안군.읍 서해로 1952-16	041-671-5398
전북		광역	전라북도광역정신건강증진 센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북로 57 아이원빌딩 4층	063-251-0650
전북	전주시	기초	전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55, 덕진진료실 2층	063-273-6995 ~6
전북	군산시	기초	군산시정신건강증진센터	전북 군산시 대야면 백마길 16	063-451-0363
전북	익산시	기초	익산시정신건강증진센터	전북 익산시 무왕로 975	063-841-4235
전북	정읍시	기초	정읍시정신건강증진센터	전북 정읍시 수성1로 61	063-535-2101

	I	I			I
전북	남원시	기초	남원시정신건강증진센터	전북 남원시 동문로 42-1 남원농협(동문지점) 2층	063-625-4122
전북	김제시	기초	김제시정신건강증진센터	전북 김제시 성산길 138	063-542-1350
전북	완주군	기초	완주군정신건강증진센터	전북 완주군 봉동동서로 89	063-262-3066
전북	진안군	기초	진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전북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1189	063-430-8578
전북	고창군	기초	고창군정신건강증진센터	전북 고창군 전봉준로 90	063-563-8751
전북	부안군	기초	부안군정신건강증진센터	전북 부안읍 오리정로124	063-581-5830
전남		광역	전라남도광역정신건강증진 센터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328-31 2층	061-350-1700
전남	목포시	기초	목포시정신건강증진센터	전남 목포시 석현로 48(석현동 하당보건지소)	061-276-0199
전남	여수시	기초	여수시정신건강증진센터	전남 여수시 시청서4길 43(학동)	061-659-4255
전남	순천시	기초	순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	전남 순천시 중앙로(232)	061-749-6884
전남	나주시	기초	나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전남 나주시 풍물시장2길 57-32	061-333-6200
전남	광양시	기초	광양시정신건강증진센터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	061-797-3778
전남	구례군	기초	구례군정신건강증진센터	전라남도구례군 구례읍 동편제길 30	061-780-2023
전남	고흥군	기초	고흥군정신건강증진센터	전남 고흥군 고흥읍 등암3길 5	061-830-6673
전남	장흥군	기초	장흥군정신건강증센터	전남 장흥군 장흥읍 동교1길 13	061-860-0541
전남	강진군	기초	강진군정신건강증진센터	전남 강진군 강진읍 목리길 11	061-430-3570
전남	해남군	기초	해남군정신건강증진센터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46	061-531-3768
전남	무안군	기초	무안군정신건강증진센터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061-450-5035
전남	함평군	기초	함평군정신건강증진센터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54-8	061-320-2512
전남	영광군	기초	영광군정신건강증진센터	전남영광군영광읍 신남로 4길 17번지	061-350-3666
전남	장성군	기초	장성군정신건강증진센터	전남 장성군 장성읍 청운11길	061-390-8373
전남	완도군	기초	완도군정신건강증진센터	전남완도군.읍농공단지길34	061-550-6745
전남	진도군	기초	진도군정신건강증진센터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동1길 40-9	061-540-6058
경북		광역	경상북도정신건강증진센터	경주시 동대로 87, 복지동 3층 (석장동)	054-748-6400
경북	포항시 남구	기초	포항시남구 정신건강증진센터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119	054-270-4091
경북	포항시 북구	기초	포항시북구정신건강증진센 터	포항시북구삼흥로98	054)270-4193
경북	경주시	기초	경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경주시 양정로 300	054-777-1577
경북	김천시	기초	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	김천시 농소면 농남로 42	054-433-4005
경북	안동시	기초	안동시정신건강증진센터	안동시경동로663	054-842-9933
경북	구미시	기초	구미시정신건강증진센터	구미시 선산대로 111	054-480-4045
경북	영천시	기초	영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	영천시 조양공원길 21	054-331-6770
경북	상주시	기초	상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상주시 경상대로 3023	054-536-0668
경북	문경시	기초	문경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문경시 신흥로 161	054-554-0802
경북	경산시	기초	경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	경산시남매로158	053-816-7190

경북	칠곡군	기초	칠곡군 정신건강증진센터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관문로 1길 30	054) 973-2023
경남		광역	경상남도 정신건강증진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동읍로 457번길 48, 경남사회복지센터 2층	055-239-1400
경남	창원시 창원	기초	창원정신건강증진센터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73번길 12 임시보건민원센터 내	055-287-1223 /275-9224
경남	창원시 마산	기초	마산정신건강증진센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북로 15	055-225-6032
경남	창원시 진해	기초	진해정신건강증진센터	창원시 진해구 중원동로 62	055-225-6691
경남	진주시	기초	진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진주시 월아산로983	055-749-4570
경남	통영시	기초	통영시정신건강증진센터	통영시 무전동 108 (안개4길 통영시보건소)	055-650-6122
경남	사천시	기초	사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639	055-831-2795
경남	김해시	기초	김해시정신건강증진센터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227 김해시보건소 2층	070-4632-2900
경남	밀양시	기초	밀양시정신건강증진센터	밀양시 삼문중앙로 41	055-359-7078
경남	거제시	기초	거제시기초건강증진센터	경남 거제시 수양로506	055-639-6200
경남	양산시	기초	양산시정신건강증진센터	경남 양산시 중앙우회로11	055-367-2255
경남	의령군	기초	의령군정신건강증진센터	경남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 8길 16	055-570-4093 /4025
경남	함안군	기초	함안군정신건강증진센터	경남 함안군 가야읍 중앙남4길 10	055-580-3133
경남	창녕군	기초	창녕군정신건강증진센터	경남창녕군(읍)우포2로1189 -35	055-530-6225
경남	고성군	기초	고성군정신건강증진센터	경남고성군 고성읍 남포로 79번길 103-3	055-670-4057 ~8
경남	남해군	기초	남해군정신건강증진센터	경남 남해군 선소로6	055-860-8785
경남	하동군	기초	하동군정신건강증진센터	하동군.읍 군청로 31	055-880-6647
경남	함양군	기초	함양군정신건강증진센터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 141	055-960-5358
경남	거창군	기초	거창군정신건강증진센터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079	055-940-8384
경남	합천군	기초	합천군정신건강증진센터	경남합천군 합천읍 동서로39	055-930-4835 ~7
제주		광역	제주특별자치도광역정신건 강증진센터	제주시 아란13길 15	717-3000
제주	제주시	기초	제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제주시 연삼로 264, 2층 내	064-728-4074
제주	서귀포시	기초	서귀포시정신건강증진센터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중 앙로101번길52(서홍동),서 귀포보건소)	064-760-6553

10. 전국 해바라기센터 현황

* 연락은 대표전화 1899-3075,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시도	명칭	운영기관	개소일	유형	소재지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	경찰병원	'05. 8.31.	위기지원	서울 송파구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보라매병원	'08.12. 3.	위기지원	서울 동작구
서울	서울해바라기센터	서울대병원	'11. 2.16.	통합	서울 종로
	서울해바라기센터(아동)	연세의료원	'04. 6.18.	아동	서울 마포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	삼육서울병원	'15.11.11.	통합	서울 동대문구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	국립중앙의료원	'16.12.13.	통합	서울 중구
HAL	부산동부해바라기센터	부산의료원	'13. 9. 6.	위기지원	부산 연제구
부산	부산해바라기센터	부산대병원	'16. 1.25.	통합	부산
CII —	대구해바라기센터	대구의료원	'06. 5. 9.	위기지원	대구 서구
대구 	대구해바라기센터(아동)	경북대병원	'05. 6. 9.	아동	대구 중구
	인천동부해바라기센터	인천의료원	'06. 3.31.	위기지원	인천 동구
인천	인천북부해바라기센터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13. 5. 9.	위기지원	인천 부평구
	인천해바라기센터(아동)	가천대길병원	'09. 7.17.	아동	인천 남동
과도	광주해바라기센터	조선대병원	'06. 9. 4.	위기지원	광주 동구
<u>광</u> 주	광주해바라기센터(아동)	전남대병원	'05. 6.29.	아동	광주 동구
대전	대전해바라기센터	충남대병원	'14.12. 1.	통합	대전 중구
울산	울산해바라기센터	울산병원	'11.12. 1.	통합	울산 남구
	경기북동부해바라기센터	의정부의료원	'07. 9.18.	위기지원	경기 의정부
	경기서부해바라기센터	한도병원	'13. 7.24.	위기지원	경기 안산
경기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거점)	아주대병원	'14.11.19.	통합	경기 수원
	경기북서부해바라기센터	명지병원	'14.12.26.	통합	경기 고양
	경기해바라기센터(아동)	분당차병원	'08.12.26.	아동	경기 성남
가의	강원서부해바라기센터	강원대병원	'12.12.12.	통합	강원 춘천
강원 	강원동부해바라기센터	강릉동인병원	'10. 9. 8.	통합	강원 강릉
	충북해바라기센터	청주의료원	'06. 2. 8.	위기지원	청주 흥덕구
충북	충북해바라기센터(아동)	건국대충주병원	'09. 7.22.	아동	충북 충주
충남	충남해바라기센터	단국대병원	'10. 1.13.	위기지원	충남 천안
전북	전북해바라기센터	전북대병원	'06. 2. 1.	위기지원	전주 덕진구
UT 	전북해바라기센터(아동)	전북대병원	'09. 7. 6.	아동	전북 전주
전남	전남동부해바라기센터	성가롤로병원	'10. 1.28.	위기지원	전남 순천
E8	전남서부해바라기센터	목포중앙병원	'10. 9.29.	통합	전남 목포
	경북북부해바라기센터	안동의료원	'06. 1.12.	위기지원	경북 안동
경북	경북동부해바라기센터	포항성모병원	'16. 1. 1.	통합	경북 포항
	경북서부해바라기센터	김천제일병원	'15.12. 1.	위기지원	경북 김천
경남	경남해바라기센터(아동)	경상대병원	'09. 8. 7.	아동	경남 진주
00	경남해바라기센터	마산의료원	'06.12. 1.	위기지원	경남 마산
제주	제주해바라기센터	한라병원	'15. 1.28.	통합	제주 제주시

11. 전국 성폭력상담소 현황

시도	시군구	상담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구로구	가족과 성건강 아동청 소년상담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 10길 20. 201호	02-2688-1366 070-8128-1366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지1길 32-42	02-338-2890
	마포구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 상담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6길 39	02-739-8858
		꿈누리여성장애인상담 소		
	강남구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59길 31, 1층 102호	02-883-9285
	강서구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 담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357 려산빌 딩 지하1층	02-2658-1366
	강서구	휴샘통합운영상담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7나길 24 내발산동	02-2661-1366
	강서구	행복드림가정상담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649, 제 성빌딩 3층	070-8864-9365
	관악구	이레성폭력상담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천로 25(서암빌 딩, 4층)	02-3281-1366
서울 (19)	금천구	벧엘케어상담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102, 401 호	02-896-0401/0 408
	동작구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15마길 8-13	02-825-1273
	서초구	서초성폭력상담소	서울특별시 서초대로27길 10-10 4층 (방배동)	02-599-7606
	영등포 구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 상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402호(이룸센터)	02-3675-4465 ~6
	영등포 구	꿈터성폭력상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13길 14(신길동)	02-6083-4971
	성북구	한국여성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22길 28 신 일빌딩 4층	02-953-1704
		북한이탈여성 성폭력 피해상담소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서로131,301호 (목동,양천사회단체봉사센터)	
	강동구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서울특별시강동구올림픽로664대우베네 시티410호	02-3013-1399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성폭 력상담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16길 8-4(녹 번동)	02-3156-5463
	석대문 구	탁틴내일청소년성폭력 상담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7길 18(창 천동)	02-338-2890
부산 (6)	동구	(사)부산여성장애인연 대 부설 성폭력상담 소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196번길 12-3, 부산장애인회관 4층	051-583-7735

	부산진 구	성가정폭력상담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255번 길 15(전포동)	051-817-4344
	동래구	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 담소	부산시 동래구 중앙대로 1523 SK허브 스카이 A3동 5,6호	051-558-8832 ~4
	수영구	다함께 성.가정상담센 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 392(광안 동)	051-753-1377
	수영구	인구보건복지협회부산 지회 성폭력상담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425 3층(남 천동)	051-624-5584
	기장군	기장열린상담소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차성로290,303 호	051-531-1366
	서구	인구보건복지협회 대 구경북지회 성폭력상 담소		
 대구	남구	대구여성의전화 부설 대구성폭력상담소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31	053-471-6484
(4)	수성구	대구여성폭력통합상담 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85	053-745-4501
	달서구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 담소	대구 달서구 와룡로5길 11	053-637-6064
	남구	(사)인천광역시여성단 체협의회부설 성.가정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345, 3층 (주 안동, 인천명품관)	032-865-1365
인천	남동구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 지회 성폭력상담소	인천남동구용천로142 (간석동 34-4)	032-451-4093 ~4
(4)	남동구	인천장애인성폭력상담 소	인천 남동구 용천로208 사회복지회관 707호	032-424-1366
	부평구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 상담소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대로137-10,107 동101호 (부평동,스카이빌라트)	032-506-5479
	동구	광주여성민우회 성폭 력상담소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196번길 3 삼 호센터별관 102호	062-521-1366
	광산구	어등 성폭력상담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로95번길 80 (우산동)	062-946-8004
	광산구	참사랑 성폭력상담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로86번길 7-17 (신창동)	062-954-4236
	남구	인구협회광주 성폭력 상담소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816 (주월 동)	062-673-1366
 과즈	남구	광주여성장애인 성폭 력상담소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382번길 8 (사동)	062-654-1366
광주 (11)	서구	광주여성의전화광주 성폭력상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77, 3층 (화정동, 추선회관)	062-363-0485
	서구	참터 성폭력상담소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348 (화정동)	062-368-5119
	북구	지구촌가족 성폭력상 담소	광주광역시 북구 군왕로 87 (두암동)	062-675-2277
	광산구	작은새 성폭력상담소	휴지	
	광산구	한아름 성폭력상담소	京 지	

	광산구	광산 성폭력상담소	- 京지	
	동구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 담소	대전광역시동구옥천로176번길15-4,322 호 (판암동,동진프라자)	042-637-1366
대전	중구	대전성폭력상담소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로 98 (오류동)	042-712-1367. 1369
(4)	중구	대전YWCA성폭력상담 소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로 128 (대흥동)	042-254-3038 ~9
	서구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 상담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서로9. 3층	042-223-8866
	중구	법률구조법인한국가정 법률상담소 울산지부부설울산성폭 력상담소	울산 중구 중앙길 127	052-245-1366
울산 (4)	남구	생명의전화울산지부부 설 가정·성폭력통합상담 소	울산시 남구 문수로 313, 삼성빌딩 505 호	052-265-5570
	울주군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 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중앙길 104	052-246-1368
	동구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 담소	울산 동구 내진길 18	052 252 6778
세종	세종	세종YWCA성인권상담 센터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조치원5길 75 여성회관1층	044-862-9191
(2)	세종	종촌종합복지센터 가 정,성폭력 통합상담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1로 116 종촌복지 센터 3층	044-850-3095
	수원시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통합상담소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61, 704호(중 동,우림빌딩)	031-232-7795
		수원탁틴내일상담소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62, 501호 (조원동,창경빌딩)	031-251-1516
		성남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성남시 수정구 수정북로 100 (태평동, 동호빌딩 6층)	751-2050
	성남시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 소	성남시 수정구 수정북로 92 (태평동, 주민태평동락 303호)	755-2527
	용인시	용인성폭력상담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갈곡로8번길 11	031-281-1366
경기 (37)		한국여성의전화부천지 부 부설 성폭력상담소	부천시 중동로 248번길 86(중동)현해 탑빌딩 302	032-328-9713
	부천시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 소	부천시 성주로 149(송내동)	032-655-1366
		새부천성폭력상담소	부천시 길주로 272(중동)	032-612-1191
		안산YWCA여성과성상 담소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광덕서로66 . 412호	031-413-9414
	안산시	정다운 가족 상담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46	031-439-1366
		안산가정.성폭력통합상 담소(휴지)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164(사동)	031-419-1366

	가톨릭여성상담소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1길 60	031)415-0117
	안양여성의전화부설성 폭력상담소	안양시동안구관악대로76(비산동) 정화 빌딩6층	031-442-5385
안양시	한국새남심리상담연구 원부설 성폭력상담소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275번길 65-1(비산동)	031-381-8530
화성시	맘 톡톡 상담센터	화성시 봉담읍 오래3길 11	031-298-2117
평택시	평택성폭력상담소	경기도 평택시 평택1로 23-1 2층	031-618-1366
김포시	김포여성상담센터	김포시 양촌읍 양곡1로56번길 3	031-984-1367
광명시	광명YWCA성폭력상담 소	경기 광명시 오리로 953	02-2619-8928
	씨알여성회 부설 성 폭력상담소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129번길 13 (송정동,3층)	031-797-7031
광주시	로뎀여성폭력피해상담 소	경기도 광주시 용샘길 147(목현동)	031-764-0577
군포시	군포여성민우회 성폭 력상담소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20-33, 802호	031-396-0236
안성시	성교육성폭력상담센터	안성시 서당길 39	031-671-1366
의왕시	의왕장애인성폭력상담 소	의왕시 부곡중앙남1길 34, 꿈머울푸러 저 202호	031-462-1366
하남시	하남YWCA부설 성폭 력상담소	경기도 하남시 신장로205번길 27 (덕 풍동,서해상가4층)	031.796-1274
	고양성폭력상담소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32-21, 로 데오메탈릭타워 602-2	031-907-1368
고양시	한마음가족상담센터	고양시 덕양구 용현로 9, 해동빌딩 510호	031-979-1367
11017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로 46, 301호(금 곡동, 양지빌딩)	031-558-1366
남양주 시	공감심리상담소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575, 302호(창노빌딩)	031-514-5150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 담소		
의정부 시	하나성폭력상담소	의정부시 부용로95, 701호(금오동,현 대프라자)	031-852-0142
	(사)사랑깊은뜰부설 경기북부가정문제성폭 력상담소	의정부시 장곡로 596번길,19 골드타워 402호(신곡동)	031-876-7544
파주시	성폭력 상담소'함께'	파주시 와석순환로 415 (운정행복센터 2층)	031-946-2096
양주시	양주성폭력상담소	양주시 독바위로 30-1	031-864-7546
포천시	포천가족성상담센터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 571(정우빌딩 3 층)	031-542-3171

		동두천성폭력상담소	동두천시 상패로 5	031-867-3100
	동두천 시	한국성건강센터	동두천시 행선로 100	031-858-1366
	연천군	연천행복뜰상담소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학담로 131	031-832-1315
	춘천시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 담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35, 3층	033-257-4687
	원주시	원주가정폭력성폭력통 합상담소		033-765-1366
	강릉	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 담소		033-652-9555
	동해시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 담소		033-535-4943
강원 (8)	속초시	사)속초여성인권센터 부설 속초성폭력상담소		033-637-1988
	삼척시	삼척종합사회복지관부 설 삼척가정폭력성폭력통 합상담소		033-573-9168
	영월군	 영월성폭력상담소 		033-375-1366
	정선군	아라리가족성상담소		033-563-8666
	청주시	사)청주여성의전화부 설청주성폭력상담소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57(서운동) 3층	043-252-0968
		충북여성장애인연대부 설 청주여성장애인성폭 력상담소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26번길 15-2 (서 운동)	043-224-9414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 세종지회 청주성폭력상담소	청주시 흥덕구 내수동로 20(복대동)	043-263-2000
충북 (8)		청주YWCA여성종합상 담소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536번길 4, 1층 (봉명동)	043-268-3007
(0)	제천시	제천성폭력상담소	제천시 내제로 5길 12(명동)	043-652-0049, 653-1331
	영동군	영동가정폭력성폭력통 합상담소	충북 영동군 영동읍 회동로 212-1, (2 층)	043-743-1366
	충주시	충주성폭력상담소	충주시 예성로 135	043-845-1366
	단양군	한스심리상담센터	충청북도단양군단양읍삼봉로274,2층	043-422-3004
충남 (15)	천안시	충남성폭력상담소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66(영성동)	041-564-0026~7
	천안시	천안여성의전화부설성 폭력상담소	천안시 동남구 고재20길 12(2층)(원성 동)	041-561-0303, 20
	천안시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 소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서5길 4, 두정프 라자 301호(두정동)	041-592-6500
	공주시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		

1				
	보령시	대천성폭력상담소	충남 보령시 대천로 35	041)931-1366
	아산시	아산가정성상담지원센 터	충남 아산시 배방읍 순천향로 1060	041-546-9191
	아산시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 소	충남 아산시 번영로 115번길 20-14	041-541-1514
	아산시	아산늘품상담지원센터	충남 아산시 번영로 69번길 10-3	041-541-0119
	당진시	당진성상담센터	당진시 무수동로 36 용연빌딩 2층.3층	041-354-2366
	금산군	우리상담센터	금산군 금산읍 금산로 1444	041-752-9911
	부여군	부여성폭력상담소	충남부여군부여읍사비로32 여성문화회 관	041-830-2923
	서천군	서천성폭력상담소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마로 14	041-956-8255
	홍성군	홍성성가정폭력통합상 담소	홍성읍 충서로 1121-32 (2층)	041-631-3939
	예산군	예산 성폭력 상담소	예산읍 주교로 50 2층	041-335-1311
	태안군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충남 태안군 태안읍 서문4길 31-6	041-675-9536
	전주시	성 폭 력 예 방 치 료 센 터 부설성폭력상담소	전주시 완산구 인정2길12-4, 3층	063-236-0151
	전주시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 상담소	전주시 완산구 신봉3길 6	063-223-3015
	군산시	군산성폭력상담소	군산시 구영7길 8	063-442-1570
되니	익산시	익산 성폭력상담소	익산시인북로 187(익산상공회의소5층)	063-834-1366
전북 (8)	정읍시	성폭력예방치료센타정 읍지부 성폭력상담소	정읍시 충정로 273(대율빌딩5층)	063-537-1366
	남원시	남원YWCA부설성폭력 상담소	남원시 시청로 65 2층	063-625-1316
	남원시	남원성폭력상담소	남원시 요천로 1415	063-635-0712
	김제시	성폭력예방치료센타김 제지부성폭력상담소	김제시 금성로 53-1	063-546-8366
	목포시	목포여성상담센터	전라남도목포시신흥로83번길5	061-285-1366
	목포시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 상담소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361	061-283-4767
전남 (9)	여수시	여수성폭력상담소	전라남도 여수시 어항로 6	061-666-4001
	순천시	전남성폭력상담소	전라남도 순천시 서운성터길104	061-753-1366

		나주여성상담센터		061-337-1366
	담양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중앙로 18 2 층	061-381-1366
	해남군	해남성폭력상담소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북부순환로 30	061-533-9181
		무안여성상담센터		061-454-1360
	함평군	보두마상담센터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외대화길 27 하나캐슬 203동 101호	061-324-1388
	포항시	(사)포항여성회 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경북 포항시 남구 송림로 10번길 6-2 (송도동)	054-284-0404
	포항시	(사)한마음부설 한마음 상담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로 40번길 8-3 (죽도동)	054-277-9540
	경주시	경주다움 성폭력상담 센터	경북 경주시 현곡면 금장 2길 25	054-777-1366 054-777-1520
	김천시	새 김천성폭력상담소 (휴지)	경북 김천시 김천로 158 (남산동)	054-437-6100
	안동시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 상담소	경북 안동시 태화중앙로 60-1(태화동)	054-843-1366
716	구미시	구미여성종합상담소	경북 구미시 광평길 41(3층)	054-463-1386 054-463-1388
경북 (12) 	구미시	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 상담소	경북 구미시 문장로 12길 18-1, 1층 (도량동)	054)443-1366
	상주시	필그림가정복지상담소	경북 상주시 영남제일로 1368	054-534-5999
	문경시	문경열린종합상담소	경북 문경시 남부3길 19	054-555-8207
	경산시	로뎀성폭력상담소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경로 766	053-853-5276
	경산시	새경산성폭력상담소	경북 경산시 경안로 132-1	053-814-1318
	칠곡군	칠곡종합상담센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전로 69-35	054-973-8290
		창원성폭력상담소	창원시 의창구 신월로 42 토월복합 상가 725호	055-283-8322
		마산여성장애인성폭력 상담소	창원 마산합포구 오동동 10길 56 가고 파오피스텔 804호)	055-241-5041
거나	창원시	성폭력상담소	п	055-244-8400
경남 (15)		진해성폭력상담소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511번길 16	055-546-8322
		동산샘상담소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 184번길 48 지 층2호(내동,공단상가)	055-277-6868
	진주시	진주성폭력상담소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477번길 11 (신안동, 2층)	055-746-7462

	통영시	통영YWCA성폭력상담소	경남 통영시 동충1길4 (항남동)	055-648-2070
	사천시	사천성가족상담센터	사천시 사천읍 수양로 126(3층)7	055-852-9040
	김해시	김해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김해시 호계로 422번길 34-5(부원동)	055-329-6453
	밀양시	밀양시성가족상담소	밀양시중앙로 268(삼문동, 여성회관)	055-359-5569
	양산시	양산성가족상담소	경남 양산시 중앙로 61, 204호	055-366-6663
	함안군	함안성'가족상담소	함안군 칠원읍 용산2길 70 (1층)	055-587-1367
	창녕군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창녕군.읍 창녕대로172	055-521-1366
	하동군	하동성가족상담소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222	055-884-1360
	거창군	거창성가족상담소	경상남도 거창군 수남로 2193-40 거창문화원 3층	055-944-1828
	제주시	제주여성상담소	제주시 관덕로8길 32(삼도이동)	064-756-4008
제주 (3)	제주시	제주YWCA 통합상담소	제주시 삼무로11길	064-748-3040
	제주시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제주시 복지로 3길 1-4(도남동)	064-753-4980

12. 종사자 스트레스 대응 및 자가 진단

□ 생활 혹의 스트레스 대응 요령

- 1. 주위 사람을 잘 활용한다. 자신에게 우호적인 가족, 친구, 지인, 회사동 료와의 대화를 통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킨다.
- 2. 취미활동, 명상, 여가활동 등을 통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스트레스 요인을 감쇄시킨다.
- 3. 평소에 꾸준한 운동을 한다
- 4. 적극적으로 스트레스 발생원인 제거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 5. 자신을 이해해주고 자신의 역할을 조언해 줄 수 있는 수퍼바이저를 만들어 문제해결력을 증진시킨다.
- 6. 자신에게 오는 스트레스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노력을 꾸준하게 한다.

□ 분노조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방 법	내 용
생각 중단하기	지금 자신이 갖는 분노 감정이 과연 관심을 줄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자신이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화를 내게 한 문제를 해결할 효과적인 대응책이 있는지를 생객해본다. 그리고는 "그만 멈춰!!" 라고 크게 소리르 지르든지, 아니면 속으로 외치든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할 것인지를 정한다.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나서적대적인 생각이나 감정이나 충동이 사라졌거나 관심 밖에 있게 되면 그럴 수 있는 자신을 칭찬한다.
관심 바꾸기	화가 나는 순간에 덜 성가신 것, 예를 들면 잡비, 라디오 프로그램, 사람 관찰하기 또는 공상하기 등 관심을 순간적으로 다른 곳에 돌려서 잠시 벗어나 본다. 때때로 효과적이다.
이완하기와 명상하기	긴장을 풀고 자연스럽게 숨을 쉬면서 정신을 집중한다. 숨을 내 쉴 때마다. 마음을 편하게 해 주는 단어나 문구를 반복해 서 말한다. 위기를 벗어날 때까지 이완과 명상을 계속한다. 집중이 어려우면 단순히 숨쉬는 것에만 집중해도 좋다.
근육이완	몸의 긴장을 풀어 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는 운동을 한 다.
자극제를 피하기	가능한 담배를 끊고 카페인이 많은 음료나 단 음식물의 섭취는 최대한 줄이고 과음과 과식도 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긴다.
사회봉사활동 하기	자원봉사 단체를 한 곳 정해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한다. 이런 경험은 보람과 인내를 키우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
공감하기	상대가 하는 행동의 동기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 많은 경우에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 성인우울자가선별검사-성인우울자가선별검사(Center for Epider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 CES-D)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자주 일어났었는지 ○해 주십시오. / 점수()

- 0. 극히 드물다. (일주일 동안 1일 이하) 1. 가끔 있었다. (일주일 동안 1일에서 2일간)
- 2. 종종 있었다. (일주일 동안 3일에서 4일간) 3. 대부분 그랬다 (일주일 동안 5일 이상)

1.	0 나는 슬프지 않다. 1 나는 슬프다. 2 나는 항상 슬프고 기운을 낼 수 없다. 3 나는 너무나 슬프고 불행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2.	0 나는 앞날에 대해서 별로 낙심하지 않는다. 1 나는 앞날에 대해서 용기가 나지 않는다. 2 나는 앞날에 대해 기대할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느낀다. 3 나의 앞날은 아주 절망적이고 나아질 가망이 없다고 느낀다.
3.	0 나는 실패자라고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보통사람들보다 더 많이 실패한 것 같다. 2 내가 살아온 과거를 뒤돌아보면, 실패투성이인 것 같다. 3 나는 인간으로 완전한 실패자라고 느낀다.
4.	0 나는 전과 다름없이 일상생활속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다. 1 나는 전과 같이 일상생활이 즐겁지 않다. 2 나는 더 이상 어떤 것에서도 만족을 얻지 못한다. 3 나는 매사가 다 불만스럽고 지겹다.
5.	0 나는 특별히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종종 죄책감을 느낀다. 2 나는 자주 죄책감을 느낀다. 3 나는 항상 죄책감을 느낀다.
6.	0 나는 내가 벌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내가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느낀다. 2 나는 내가 앞으로 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다. 3 나는 지금 벌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7.	0 나는 내자신에 대해 실망하지 않는다. 1 나는 내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있다. 2 나는 내자신이 싫다. 3 나는 내자신을 증오하고 있다.
8.	0 나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나의 약점이나 실수에 대하여 내자신을 비판하는 편이다. 2 나는 나의 잘못에 대해 항상 내자신을 질책한다. 3 나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모든 일에 대하여 내 자신을 질책한다.
9.	0 나는 자살할 생각 같은 것은 하지 않는다. 1 나는 행동에 옮기지는 않지만 자살할 생각을 갖고 있다. 2 나는 자살하고 싶다. 3 나는 기회만 있으면 자살하겠다.
10.	0 나는 전보다 더 자주 울지 않는다. 1 나는 요즘 전보다 자주 운다. 2 나는 요즘 항상 운다. 3 나는 너무 울어 이제는 울고 싶어도 눈물이 안 나온다.

11.	0 나는 전보다 더 자주 화를 내지는 않는다. 1 나는 전보다 더 신경질적이고 짜증스럽다. 2 나는 요즘 항상 짜증스럽다. 3 전에는 짜증스럽던 일인데도 이젠 짜증조차 나지 않는다.	
12.	0 나는 전처럼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1 나는 전보다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2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어졌다. 3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어졌다.	
13.	0 나는 전처럼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다. 1 나는 전에 비해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고 뒤로 미룬다. 2 나는 전보다 어떤 일을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3 나는 더이상 어떤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	
14.	0 나는 전보다 내 모습(외모)이 추해졌다고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내가 나이 들고 매력 없게 보일까봐 걱정한다. 2 이젠 남에게 매력을 주지 못할 만큼 내모습이 변했다. 3 나는 내가 못 생겼다고 생각한다.	
15.	0 나는 전과 다름없이 일을 잘 할 수 있다. 1 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전보다 더 힘이 든다. 2 어떤 일을 하기가 무척 힘들다. 3 나는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다.	
16.	0 나는 전처럼 잘 잔다. 1 나는 전처럼 잘 자지 못한다. 2 나는 전보다 한두시간 일찍 잠을 깨며 다시 잠들기가 어렵다. 3 나는 전보다 몇 시간 일찍 잠을 깨며 다시 잠들 수가 없다.	
17.	0 나는 전보다 더 피곤을 느끼지는 않는다. 1 나는 전보다 더 쉽게 피곤을 느낀다. 2 나는 거의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피곤을 느낀다. 3 나는 너무 피곤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18.	0 내 식욕은 전보다 나빠지지 않았다. 1 내 식욕은 전처럼 좋지 않다. 2 내 식욕은 요즘 매우 좋지 않다. 3 요즘은 전혀 식욕이 없다.	
19.	0 나는 요즘 몸무게가 줄지 않았다. 1 나는 전보다 몸무게가 조금 줄었다. 2 나는 전보다 몸무게가 많이 줄었다. 3 나는 몸무게가 너무 많이 줄어 건강에 위협을 느낄 정도다.	
20.	0 나는 전보다 건강에 대해 더 신경 쓰지는 않는다. 1 나는 두통, 소화불량, 변비 등으로 건강에 신경이 쓰인다. 2 나는 건강에 신경이 많이 쓰여 다른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3 나는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에 대해 걱정이 심하다.	
21.	0 나는 요즘도 성(性)에 대한 관심에 변화가 없다고 생각한다. 1 나는 전보다 성(性)에 대한 관심이 적어졌다. 2 나는 요즘 성(性)에 대한 관심이 현저하게 줄었다. 3 나는 성(性)에 대한 흥미를 완전히 잃어 버렸다.	

○ 결 과

점 수	결 과	비고
10점	정 상	-
10~16점	경 증 우 울	-
17~29접	중 등 도 우 울	전문가 정신건강상담 필요
30점 이상	중 증 우 울	전문의 상담 및 진료 필요

(출처 : 정신건강증진센터 홈페이지 '자가테스트'에서 발췌)

13. 아동 대상 안전 및 인권 교육 실시 결과 보고 양식 (아동복지시설 → 지자체 보고 양식)

□ 교육 실시 결과

○ 교육대상 000 명 대비 000명 참석 참석률 00%

구 분	일시	장소	교육강사	교육내용	참석대상	참석률
초등생				*간단하게 내용 을 적고 세부 내용 "붙임3" 로 처리		
중학생				u .		
고교생				"		
비재학자				u		
대학이상				"		

□ 향후 계획

안전 및 인권 관련하여 시설 차원의 향후 추진계획을 기재

□ 별도 붙임 자료

- 1. 0000시설의 2017년도 아동대상 안전 및 인권 교육 실시 계획서
- 2. 교육대상별 교육실시 내용
- 3. 교육 강사 현황(강사 이력 및 프로필)
- 4. 교육 강사별 강의계획서. 끝.

14. 시설운영위원회 보고 양식 (아동복지시설 → 지자체 보고 양식)

□ 시설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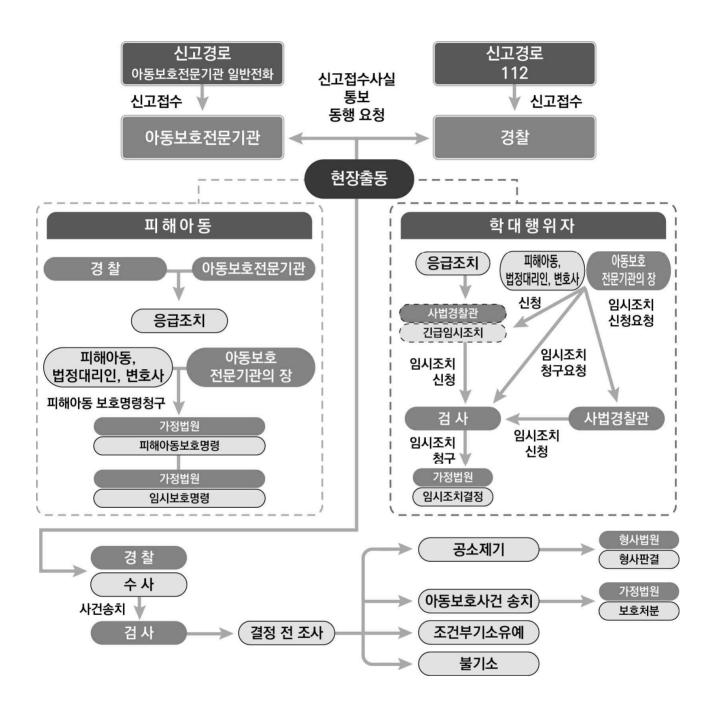
연번	소속	직책	위원명	자격 구분
				후원자 대표, 지역주민, 공 익단체 추천, 시설거주자 보 호 대표, 시설종사자 대표 등으로 구분
				"
				66
				"
				"
				"
				"
				"
				"
				"
				"
				"
				"
				"
				"
				"
				66

□ 시설운영위원회 개최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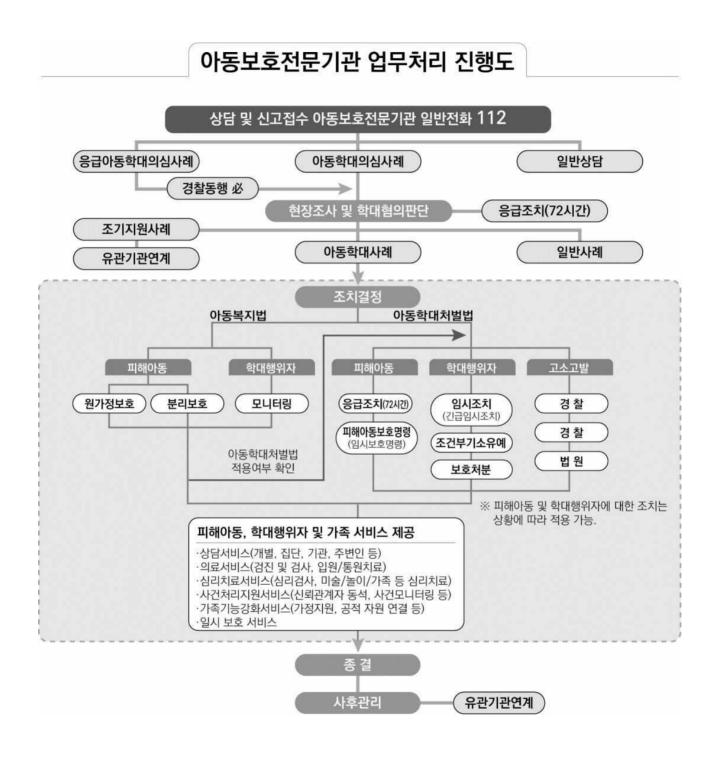
일시	회의장소	안건	참석대상	참석	참석률	회의협의
三	47.07	ピ化	1 7 9 0	19 7	<u> </u>	내용
						간단하게 내용 적고 세부 내용 붙임 처리

붙임 : 시설운영위원회 회의 협의 내용 각 1부. 끝

15. 아동학대사건 업무처리 진행도



16.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처리 진행도



- 본 자료는 ① 2017년 아동복지시설 취약아동 보호강화 방안(제10차 「범정부 아동학대대책추진협의회」자료)
 - ② 2017년 아동분야 사업 안내(2)
 - ③ 2016년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
 - ④ 2017년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
 - ⑤ 2016년 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대응매뉴얼 등을 참고로 하여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